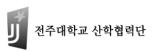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 :

홍현미라(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장혜림(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세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은정(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구보조원 :

오윤진(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제목: 나아 엔 내가 었다. 하고아에 라고가 있다. 고모양 만 하고다. 나라 안에 나라 가 없고 299 04 424 OICE 건데기만 이다. 어디마 회사들에국 떠있는 나 바지 이어버리

※ 본 사진은 포토보이스 조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현재는 모국으로 돌아간 미등록이주아동이 지은 시(時)이다.



연구요약

I. 서론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중 영유아의 중요한 권리이자 욕구인 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임. 또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과 문헌을 검토하고 국외사례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아동권리관점에서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인식변화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음.
-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한국의 법률과 정책 검토
 - 현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보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접과 분석
 -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제언
-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문헌연구
 - 질적 연구방법(포토보이스 연구)

Ⅱ.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문헌연구

1. 미등록이주아동 정의와 현황

- □ 미등록이주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출생부터 교육까지 영유아기를 비롯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임.
- □ 미등록이주아동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미등록이주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법무부 '출입

국 외국인정책 통계'등에 의거, 국내 미등록이주아동은 2만명 내외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임.

2. 국제조약에 근간한 미등록이주아동 권리보장

-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
 -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등을 아동의 모든 권리로 규정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대한민국은 비준 당사국으로서 국내외 아동관련 법과 서비스를 아동권리협약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
 -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정책 지원에 대한 관련 근거 제시
 - · 제2조: 인종, 언어, 사회적 출신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
 - ·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으로 고려
 - · 제7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짐
-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대한민 국 미가입)
-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1961년 가입)
- □ 한국 상황에서 요구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의 당위성
 - 현재 한국은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존재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인정하지 않고 인권의 사각지 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조정, 국익에 반함.
 - 자본주의 원리 기반으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민도 일정한 세금 납부 후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미래 통일 준비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을 포용해야 함.

3. 미등록이주아동 관련법과 정책

- □ 출생등록권
 - 지원근거: UNCRC 제7조(출생 후 즉시 등록, 성명권, 국적 취득권)

- 출생등록권의 의미: 국가제도의 측면(개인의 존재 인정, 권리보호) + 개 인 권리의 측면(출생등록의 권리, 다른 권리 보호를 위한 발판)
- 실태: 신고제에 의해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만 이 출생등록이 가능함. 미등록이주민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국적취득권

- 지원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5조(모든 인간의 국적을 가질 권리)
- 실태: 우리나라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적용. 속지주의의 제한 적인 적용도 허용하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보육권

-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제3조(보육 이념)
- 실태: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 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과는 배치됨. 미등록이주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불허, 높은 비용 부담으로 보육 받을 권리가 제한됨.

□ 교육권

- 지원근거: 세계인권선언 제26조(모든 사람의 교육 받을 권리), UNCRC 제28조(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
- 실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 12.)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초중등 학교 입학이 허가되었음.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이며, 상급학교 진학은 여전히 불가함.

□ 건강권

- 지원근거: UNCRC 24조(건강하게 자랄 권리)
- 실태: 미등록이주민과 그 자녀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 자비 혹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인 의료서비스에 의존

4.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해외사례

- □ 출생등록 및 체류권: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에서 출생하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며,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보편적 출생등록 이 보장되고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부분적 속지주의를 인정하고 있음.
- □ 교육권: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복지 혜택에 소극적인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은 다수의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음.
- □ 건강권: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나라에서 미등록이주아동 혹은 영유아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Ⅲ. 미등록이주아동 포토보이스 연구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 연구 참여자 선정(총 6인): 미등록이주아동과 활동해 온 현장실무자를 대 상(평균 경력 10.2년)으로 임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선정함.

□ 연구과정

- 총 기간: 2016. 4. 8. ~ 22. (3회의 면접 조사)
- 참여자는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정책)', '보육교사'와 관련된 사진 촬영 후 발표함(각 3시간 정도).
- 녹취록 전사 후 자료 분석
-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 □ 자료분석 방법(Van Manen): 필사 \rightarrow 필사본과 녹음 내용 비교 검토 \rightarrow 경험 내용별로 텍스트 분리 \rightarrow 주제진술로 분리 \rightarrow 범주화 \rightarrow 본질적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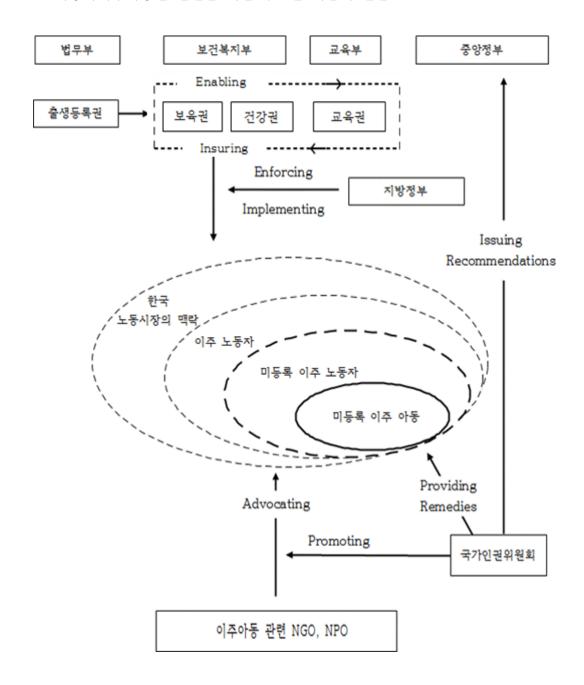
2. 포토보이스 분석결과

- □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남.
 - 우리나라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채로, 영속성 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안녕하지 않은 채로 태어남.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지만,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에는 고난의 시작이 예고되어 있음. 발달의 자극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이건만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불안 이라는 일상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감. '있는데 없는' 존재로서의 삶 을 살아가는 아동들은 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주변인이자 피해자 임. 이들은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로 흔히 인식되 나,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행동 뒤에 불안과 고립이 숨겨져 있고, 언어로 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터에 그들의 함성과 요구는 분노로 표출 될 뿐 임. '미등록'이 약점이 되어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 고, 불량한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 야 함. 부모보다 한국말을 잘하게 된 아이들은 부모의 일부 역할을 대 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신이 불법체류 단속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되기도 하면서 불법체류라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음. 비록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 들은 저마다 다양성이라는 예쁜 빛깔을 가지며 앞으로의 사회를 비춰나 갈 빛 같은 존재들임.
- □ 건강한 존재로의 성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그러나 성긴 구멍의 안전망
 - 영유아 시기의 건강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미등록이 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고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가기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못받으니, 처음에는 감기처럼 가볍고 일반적인 증상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큰 병으로까지 발전하며 악순환이 지속됨. 미등록이주영 유아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의료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후 의료 제도의 부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검진 기회의 박탈, 예방접 종 기회 부족, 불량한 환경과 먹거리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진 결과 이기 때문임.

- □ 누구도 관심 없고 책임지지 않는 보육현실
 - 부모라면 내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나서게 될 것임. 미등록이주아동 부모 역시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어 불안 한 신분임에도 자녀들의 교육에 조바심을 내보임. 하지만 불법이라는 체류신분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림의 떡'임. 다행히 일반 어린 이집에서 입학허가를 받는다 해도 비싼 보육료가 너무 부담되며, 몇 개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은 인력도 공간도 부족함.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부모는 조바심과 열의로 이주민센터 를 어린이집 다니듯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일정 시간을 보내 고 돌아가는 것으로 시늉을 하며 위안을 삼음.
- □ '있는 데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있으나 마나 한' 현재 정책
 - 미등록이주아동은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없이 사랑스럽고 환 영받는 존재이지만 체류자격으로 보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있 는 데 없는' 존재가 됨.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 역시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 □ 배려와 양보가 기반이 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권조차 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미등록이 주아동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출생등록제도 임. 배려와 양보를 기반으로 서로 연대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아동들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전환이 요구됨. 무엇보다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함.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자녀들의 발달 상태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고 교사들과는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무엇보다 아동 자체를 사랑하고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발전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교사를 확보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Ⅳ. 정책대안

□ 미등록이주아동권 실현을 위한 구조는 다음과 같음.



□ 미등록이주아동권의 법률 환경 및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음.

<표 1> 미등록이주아동권의 법률 환경 및 정책대안

		÷ ▼□□○□□□□□□□□□□□□□□□□□□□□□□□□□□□□□□□□□□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자 자녀 보육 지원(경기도) • 영유아필수예방 접종 국가부담사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대출청구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등 학교 입·전 학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초·중등교육 기관과 공공보건 의료기관등의 '통보 의무' 규정면제
보건복	^븎 지부	교육부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지원 (경기도 모형) • 문화적 민감성을 확보한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체계	산전의료관리체계 영유아 건강검진 미등록이주아동 특례조항(의료 급여혜택)	• 상급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로의 입학 허가
지	방정부	
• 이주아동전담·통합 어린이집 운영 • 미등록이주아동보육비감면·대납·체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내용 확대적용	•미등록이주아동 응급 의료비지원	다문화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 다문화교육바우처 도입 위기개입서비스
	지원(경기도) 보건물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지원 (경기도 모형) • 문화적 민감성을 확보한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체계 지 • 이주아동전담·통 합 어린이집 운영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비감면·대납·체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내용 확대적용	• 저소득외국인근로 자 자녀 보육 지원(경기도)

민간 및 국가인권위원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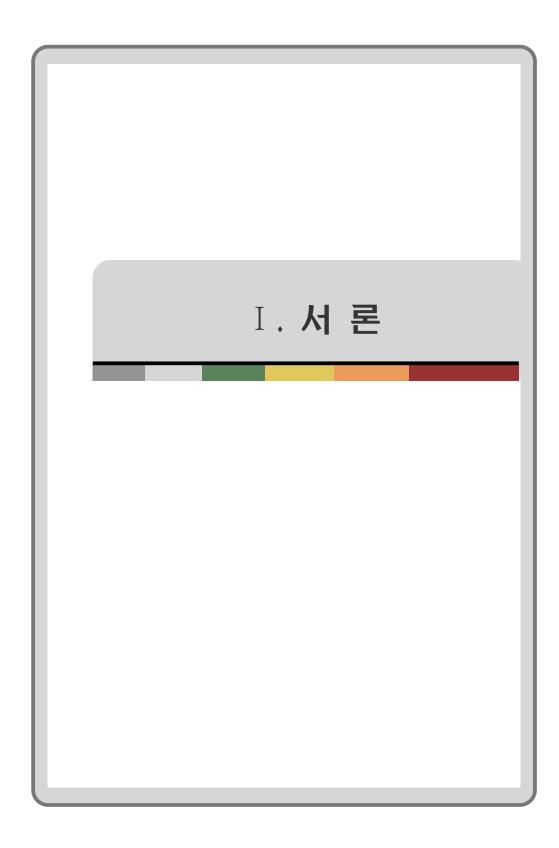
- '이주아동 권리 기본법' 제정촉구
-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거점기관 지정사업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촉구
- •국제아동인권센터, 지역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 등

목차

I. 人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방법
II. I	기등록이주아동 관련 문헌연구····································
1.	미등록이주아동 정의와 현황
2.	국제조약에 근간한 미등록이주아동 권리보장 18
3.	미등록이주아동 관련법과 정책21
4.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해외사례 37
III.	미등록이주아동 포토보이스 연구 47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49
2.	포토보이스 분석결과 54
3.	결과 요약94
IV.	정책대안······ 99
1.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101
2.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104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민간차원의 노력 107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112
참고	문헌····································
	록119

〈 표 목 차 〉

〈丑	$II -2-1 \rangle$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12
〈丑	$II -2-2 \rangle$	연령별 불법체류자 현황
〈丑	Ⅱ -3-1>	출생등록권 보장 근거 21
〈丑	$II -3-2\rangle$	국적취득권 보장 근거 24
〈丑	$II -3-3\rangle$	보육권 보장 근거 25
〈丑	$II -3-4\rangle$	교육권 보장 근거 27
〈丑	$II - 3 - 5\rangle$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 변경 29
至〉	II - 3 - 6	건강권 보장 근거31
至〉	$II -3-7 \rangle$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3
至〉	Ⅱ -3-8>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주요내용34
〈丑	$II -4-1 \rangle$	주요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과 체류권,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현황46
〈丑	Ⅲ-1-1>	연구 참여자~~~~ 50
〈丑	$III-1-2\rangle$	포토보이스 면접 질문 51
〈丑	Ⅲ-3-1>	포토보이스 결과 코딩표96
〈丑	$\text{IV}-1-1\rangle$	미등록이주아동권의 법률 환경 및 정책대안111
		〈 그림 목차 〉
		(48 48)
「ユ゙゙゙゙゙゙	립 I -2-1]	연구흐름도
		부모체류 자격에 따른 미등록이주아동이 되는 경로 12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정 연혁
		미등록이주아동권 실현을 위한 구조110
L 1	T T]	107 11 10 년 년년린 11년 14 110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이래, 미등록이주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시각 속에서 근본적인 법적 보장과 정책의 변화 없이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어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다.

미등록이주아동이란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결혼 이민자 등의 자녀로 국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숫자는 1만에서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속인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현행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은 한쪽 부모가 한국국적이 아니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기에 대다수 이주아동들이 '존재 자체가 불법'이거나 '있어도 없는 존재'인 상태로 숨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자체가 불법'이거나 '있어도 없는 존재'란 의미는 아동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한국에 정착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보육기회의 박탈, 학교생활에서의 차별과 소외, 방임, 건강권 미보장 등으로 인한생존.보호.발달권에 위배되는 여러 문제들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기는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급등기이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며 성인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이다. 발달론 관점에 입각하면 아동의 생애초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첫 6년 동안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이자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Davies, 2004). 따라서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발달육성이나 보호하는사회적 지원이 부재할 때, 그 결과는 성인기 문제로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가능하다.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거하면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모

든 아동은 어떠한 조건을 불문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함께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 협약에 의해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은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한국 역시 1991년도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기에 이 협약을 충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법 어디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미등록이주아동을 법을 위반한 주체로 보기에 앞서 아동권리를 누릴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만(백선정·전민경·김예솔, 2014), 한국은 아동권리의 주체로 보기에 앞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범죄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기초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 원칙을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다 어린시기인 영유아기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게 하는 필수지원 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할 때 미등록이주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이주아동 보육이나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비하며 관련 법령도 없고 미인가 시설에 의존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이다.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권에 초점을 둔 학령기 아동에 집중된 연구에서 최근 들어 영유아의 권리보장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등록이주아동의 유입경로나인권실태에 관한 연구(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김성천·장혜림·안진경·이은하·유희원·이은주·김효수, 2008)나 학령기 아동의 교육 혹은 문화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조영달·윤희원·박상철, 2006; 황필규, 2008; 국가인권위원회, 2010) 등 전반적인 아동권리 실태나 학령기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 혹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취학 이주아동의 양육실태나 보육지원에 관한 정책 등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군포아시아의창·안산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평택외국인복지센터·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백선정·전민경·김예솔, 2014; 백선정, 20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중 영유아의 중요한 권리 이자 욕구인 보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적,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이주아동의 정확한 보육 현황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법률검토를 위한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이주아동과 함께 활동해 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이주아동이 직면한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포토보이스 집단면접조사(photovoice interview)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 한국의 미등록 이주 영유아의 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과 문헌을 검토하고 국외사례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아동권리관점에서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발달권과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인식변화에 기여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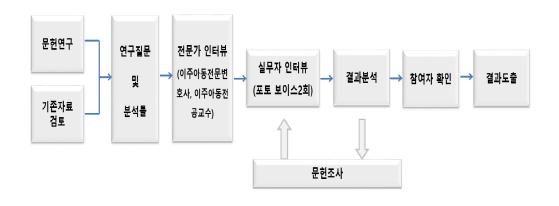
첫째,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한국의 법률과 정책 검토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아 동권리협약과 이주아동 관련한 국내외 문헌과 법률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보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접과 분석 이주아동과 함께 활동 경험의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토보이스 면접조 사를 실시하여 현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 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미등록이주아동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에 관한 심층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셋째,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제언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제시된 결과와 문헌검토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근간 으로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문제를 개선할 제도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I-2-1] 연구흐름도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와 국내외 법률 및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을 통해 이주아동 관련한 조항을 검토하고 국내법으로의 적용가능성과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 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초점은 미등록이주아동 중 미취학 아동이나 그 부모이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특성상 체류자격이 미등록으로 불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과 부모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미등록이주아동 보육경험을 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포토보이스 연구를 하였다.

셋째, 포토보이스 결과에 대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의도했던 방향과 상이하거나 수정 및 보완하고 제안하고자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반영 하였다. Ⅱ.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문헌 연구

Ⅱ.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문헌 연구

1. 미등록이주아동 정의와 현황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략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이주아 동은 1만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2014). 권리의 주체인 미등록이주아동은 추정된 숫자만 보더라도 더이상 사회가 방관할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기되는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한국 정부의 권리협약 불이행 사항은 이들의 요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의 정의와 현황, 경로, 그리고 일반적인 현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미등록이주아동 정의

미등록이주아동 개념은 학자와 시기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살펴보면, 이주아동이란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결혼 이민자 등의 자녀로 국내 체류 자격 없이 살아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거나(김성천·장혜림·안진경·이은하·유희원·이은주·김효수, 2008), 인권위원회(2010)의 정의에 따른 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오거나 부모가 한국체류 중에 태어난 아동이 이주아동이다.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첫째,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한국으로 이주한 아동과 둘째,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한국으로 이주한 아동과 둘째,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최근의 정의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아동이란 단기체류(90일 미만) 기간이 만료한 상태이거나 장기체류(90일 이상)상황 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등록은 했으나 이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무국적자로 정의할 수 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

칠드런 · 이주와인권연구소 ·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이주아동을 정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국적이다. 이로 인해 아동의 국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적효력 범위를 규정짓는 대표적인 방식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이다. 속지주의(屬地主義)¹⁾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태국 등이 있다. 속인주의(屬人主義)란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대표적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이 있다.

속인주의를 택한 국가에서 이주민에게 관대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최근 급증하는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은 이주민에 관한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던 독일은 부분적으로 속지주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정책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유연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연한 정책은 국제화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으며 급감하는 인구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속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이 어디에서 출생하든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체류자격이 결정된다. 이에 미등록이주아동 옆에는 미등록이주부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부모의 체류자격변화에 따라 미등록이주아동이 되는 경위는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등록 체류자격의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산한 아동, 미등록체류자격의 부모가 외국의 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아동이다. 또한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들의 자녀 역시 등록아동에서 미등록아동으로 체류자격이 바뀌게 된다.

현재 한국은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법은 부재한 상황이나 이들의 부모인 외국인근로자나 재한외국인과 관련한 법은 제정되어 있다. 각 법은 법적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²⁾"가 체류기

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http://www.law.go.kr

^{2)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관을 넘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며 이들의 자녀는 미등록이주아동이 된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3) 제2조에서는 그 대상범위를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고,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거할 때, 미등록이주부모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4)'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상의 법을 살펴본 결과, 각 법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라는 개인 초점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등록이주민과 아동은 법의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인중심, 등록이주민중심의 법과 정책이기에 미등록이주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이중차별과 사회적 배제라는 운명적인 굴레 속에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주노동자, 다문화, 아주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2016년에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1조를 시작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차별금지, 신분의 보장, 교육권, 건강·복지권 권리 등을 제안하는 「이동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에서 3년째 계류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체류자격에 의해 자신의 체류자격이 결정되어 출생부터 교육까지 영유아기를 비롯하여 아동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미등록이라는 사유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대상으

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2007}년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재정됨.

^{4) 2008}년「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 : 김성천(2010)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Ⅱ-1-1] 부모체류 자격에 따른 미등록이주아동이 되는 경로

2) 미등록이주자 현황

한국은 불법체류 신분인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출생에서부터 출입국과 관련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등록이주아동은 국적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를 통해 미흡하나마 그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법무부가 발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략한 19세 미만의 아동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 아동은 1만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미등록이주아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수치는 어디까지 추정에 불과하다.

<표 II-2-1>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2013년	1,576,034	1,392,928	183,106
2014년	1,797,618	1,558,840	208,778

출처 : "2014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74"에서 인용(2014년 12월 31일 현재)

연령에 따른 불법 체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총 208.778명 중 30~39세 이상이 67,16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40~49세 54,982명, 20~29세 48,49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미등록이주 아동은 5,881명으로 나타났으나 만 18세 미만 아동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체가 '불법'이므로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가의 통계시스템으로 현황으로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제약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출산한 미등록이주아동은 출입국 통계에서 누락되어 정확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어 2만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ㆍ세이브더칠드런ㆍ이주와인권연구소ㆍ안산이주아동 청소년센터, 2015; 이주노동희망센터, 2015).

<표 Ⅱ-2-2> 연령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

총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8,778	5,881	48,497	67,164	54,982	20,552	11,702

출처: "2014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77"에서 인용(2014년 12월 31일 현재)

2. 국제조약에 근간한 미등록이주아동 권리보장

본 장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이 불법체류자격임에도 불과하고 이들의 성장과 보호를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을 국제조약에 근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각종 국제조약과 더불어 현 한국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성별, 인종, 국적,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세계 인권선언(1948)을 필두로 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 26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

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아동의 교육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는 미등록이주아동 역시 포함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적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등을 아동의 모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보호받아야할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을 지닌 독립적인 주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대한 중요한모태가 된다. 현재 아동권리협약안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세계 195개국5)이 비준하여 국제인권조약의 역사상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총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제1조~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 아동 보호 의무 규정과 2부(제43조~제54조)는 협약의국제적 이행 조치 규정, 3부(제46조~제54조)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를 살펴보면,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인정하고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아동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단순한 선언의 단계를 넘어서 구속력을 갖고 있어 비준국들의 정부와 시민사회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상과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가입국의 아동 정책,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 관련 법률에관한 내용을 개선·보완할 준거 틀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의의를 가진다(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내의 아동관련 법과 서비스를 아동권리협약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정책 지원에 대한 관련 근거 역시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미등록이주아 동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를 선언하는 몇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정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 어

^{5) 2015}년 5월에 남수단이 195번째 비준국 반열에 오름.

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할 것,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비준국들은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 협약보고 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1991년 11월에 첫 번째 보고서 를 제출하고 2002년에 2차 보고서, 2008년에 3,4차, 2017년에 5,6차 보고서 를 제출할 예정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아동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영위하지 못하는 것에 대 한 깊은 우려가 1~4차까지의 보고서에 일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차 보고 서에서는 대한민국정부가 협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이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 하여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 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한 민국정부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특별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가정.학교.사회생활에 있어 아동의 참여 증진을 위 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아동이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오로지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를 더 욱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2차 보고에서는 1차 보고서에 권고 받은 사항과 함께 18세 미만 전체아동에 관한 항목별 통계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립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주자 자녀와 관련된 부분으로 대한민국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이 외국아동, 특히 불법이주노동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안하였다. 불법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아동들이 자국민 아동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 국내법 개정하여 1990년에 협약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6)에 비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가장 최근에 제출한 3.4차 아동권리협약보고서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 의 권고사항 중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항목 인 G.특별보호조치(협약22, 30, 32-36, 37, 38, 39, 40) 부분에서는 대한민국법률은 난민 및 망명 희망 아동에게 시민권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법무부가 제시한 미등록이주아동의 추계에 대한 조사과정의 한 계로 인해 수치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정책 수립 이전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체류상태에 의해 아동의 교육권 접근이 제한되어 이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 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아동들은 특히 교 육권 및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교육의 경우 현행법(교육 기본법,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중학교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학년 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이 어렵고, 초등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학 및 입학이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며 학력인정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는 점 역시 주 요한 권고사항이다. 또한 난민 아동은 국적, 의료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 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인이 모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 져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관한 문 제는 국가가 얼마나 아동문제를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파 악할 수 있는 척도이므로 이주아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내 아동과 동 등한 권리가 있으며 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인식증 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을 지원해야하는 당위성은 대한민 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지만 권고수준의 국제법을 국내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국가의 의지에 달렸다. 국내에서는 이미 민간단체들이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미등록이주아동의 차별금지, 신분의 보장, 교육권, 건강·복지권 권리 등

^{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제안하고 있는 「이동아동권리보장법」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회를 비롯한 인권단체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는 등 미등록이주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 항 등을 통해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해 사안은 선별적이고 시혜적 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지원은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원론적인 주장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경제위기에 처 해있는 대한민국사회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을 지원해야하는 좀 더 구체적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적인 법률제정 및 제도마련 부분 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었지만, 인종차별문제에 관한 한국사 회의 명확한 인식이나 법제도의 실효적 시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11년 아동권 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 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 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재차 강조되었듯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야하는 비준국으로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미등록이주아동에게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 부모의 체류상태로 인해 아동의 교육권이 제한되고 이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 반복적인 권고를 받았다. 유 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이 내국 민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 및 기타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강 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권리협약 외에 국제조약에 근간한 이주아동의 지원 당위성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RMW)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협약제2조는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매우"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본 국제협약 중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하

여 눈여겨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즉 국제사회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존재만이 아닌 '가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류은숙, 2007)." 셋째, 이주노동자 자녀가 이름, 출생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협약은 현재 46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직 미가입 상태이다. 협약에 제시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은 이미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이미 인정해야 하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Persons, 무국적자 협약)은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국제법이며 무국적자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장(유엔난민기구, 2005)"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협약 역시 미등록이주아동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한국 상황에서 요구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의 당위성

한국 아동복지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천명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강조하고 있다.이는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아동복지서비스는 이러한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기 때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미등록이주아동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오히려 현재 자신의 체류현황이 드러나 추방당할 것을 우려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ㆍ세이브더칠드런ㆍ이주와인권연구소ㆍ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이주노동희

망센터, 2015). 특히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은 전 생애에 걸쳐 성장에 핵심이되는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공교육 진입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권리보장과 함께 현재 한국 사회는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출될만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은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추정하는 숫자도 점점 증가하는 만큼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 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고 기본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국 가행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체류신분이 미등 록일지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출생등록권'을 부여하여 기본적 인 현황과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존재하 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더불어 국 익에도 반하는 결과일 수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 인구 절벽이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로 투입될 자원일 수 있 는 미등록이주아동의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현황파악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출생등록을 통해 미등록이주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 불 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등록이주아동은 자신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기반으로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욕구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그 리고 의료서비스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 역시 다음 단계의 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민이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137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11만 8천명(9.4%)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5). 이중 취업자는 68.3%로 과반 수 이상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이중 체류자격의 합법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일하며 소비세, 송금비 등 세금을 납부하는 등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

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등록된 이주민일 경우에는 보험방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한국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한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동시에 재원이 축적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를계기로 더 많은 이주민들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통일 준비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을 포 용하는 것이다. 통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며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통 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통일정책은 자주, 평화, 민주 원칙을 기반으로 1982년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시 작으로 현 정부에서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연합을 기틀로 민족통일 을 이룬다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통일부, 2016).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원만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소수자와 저개발국가에 대한 편견을 종식시키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실제 한국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들은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용수준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다 우리 사회에서 접촉 빈도가 높은 소수자 즉 미등록이주아동을 수용하고 이들과의 통합을 통해 미래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열린다면 통일 된 이후 북한 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3. 미등록이주아동 관련법과 정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등록이주아동은 '미등록'이기 이전에 '아동' 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을 법을 위반한 주체로 보기에 앞서,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백선정·전민경·김예솔, 2014).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인 아동과 미등록이주아동을 차별하고 있으며, 아동으로 보기에 앞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범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영유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인 권리가 출생등록권·국적취득권, 보육·교육권, 건강권임을 감안하여, 이 들 권리에 대한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생등록권, 국적취득권

(1) 출생등록권

<표 Ⅱ-3-1> 출생등록권 보장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 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출생등록은 아동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인간 개인의 출생과 신분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이며, 둘째, 보육·교육·건강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며, 셋째, "출생등록문서는 국적취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환경일보, 2013. 11. 10.) 또한 출생등록권은 체류와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일차적 필요조건인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등록자 단속과 추방은 항상 환경을 불안정하게만든다(석원정, 2013)."즉, 김철효 외(2013)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출생등록은개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권리보호와 의무 부과의 책임을 확인한다는 국가제도의 측면과 개인의 권리의 측면이 있고, 개인의 권리는 출생등록 자체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 보호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출생등록의 부재는 다양한 인권문제와 법적 미보호 상태에 놓이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체계 마련은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고제에 의해 출생등록이 이루어지며, 관련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본 법률 1조에서는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만이출생등록이 가능해서, 외국국적의 아동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미등록이주민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주재하거나 관할하는 부모 국적국의 재외공간에서 출생등록(김철효·최서리, 2013) 할 수 있지만 미등록인 상태 혹은 본 국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일이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예규'제31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출생사실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출생증명은 출생 사실의 '신고'와 국가의 '등록'과,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김철효·최서리, 2013), 이는 신고서류 편철장에 접수해두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미등록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증명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가 부재하여, 아동은 출생 신고와 등록을 하지 못하는 '미등록'상태가 된다.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증명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최홍엽(2009)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절차는 국적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무국적자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없이도 미등록이주민 아동의 이름, 출생지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효 외(2013) 역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내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부모가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구비하여 자녀의 출생등록 을 하는 현행방식보다는 모든 산부인과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그 즉시 출생 을 등록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최홍엽, 2009; 군포 아 시아의 창 외, 2012; 김철효·최서리, 2013). 이러한 시스템은 '보편적 출생 등록'7)이라 불리며,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제적인 사례에서 그 예시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부모의 신고에 의한 출생등록만 가능하였 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우편에 의한 출생신고도 가능하게 되었 으며, 2016년도부터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어(2016년 4월 현 재에는 아직 시행중이지 않음), 별도의 서비스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 함으로 써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들은 예방접종 일정 안내와 함께 보육비나 양육수 당, 출산지원금 등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 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 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중앙일보, 2015. 12. 24.)"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출생등록 시 구비서류에 신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어 우편·온라인 출생신고로의 도입은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적인 개편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도입 이면에서는 출생아동을 모두 파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 바, 병원에서의 자동 출생신고 방식의 정착은 부모의 신분 확인 없이도 아동의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다 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다.

⁷⁾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ight):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출생 장소 등 출생 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

(2) 국적취득권

<표 Ⅱ-3-2> 국적취득권 보장 근거

- 세계인권선언

제15조: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국적(혹은 시민권) 역시 출생등록권과 유사한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개인에게 정체성을 제공해 주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여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부여" 해주며(유엔난민기구, 2005), 둘째, "국적 그 자체는 개인이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에 불과하지만, 국적이 현실로 과하는 기능에 따라서는 인권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이병화, 2012)." 따라서 위에서 정의한 국적의 정의에 따르면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본인 개인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예를 들어 교육의 기회, 건강보험 자격 부여)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명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⁸⁾. 그러나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속지주의의 제한적인 적용도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 중 제 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의하여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지만, 부모 모두 미등록이주민인 자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국적은 또한 체류자격과 관련이 되는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23조9)

⁸⁾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될 때에는 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의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무국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적 확인의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체류자격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김철효·최서리, 2013).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의한 체류자격은 유효기간이 짧아, "체류와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게(김철효·최서리, 2013)" 된다.

체류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에서는 임신한 여성 미등록이 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체류기간의 유예와 미등록이주아동의 단계적 체류자격 강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여성미등록이주노동자가임신·출산한 경우 체류 기간에서 유예 해 주는 제도로서, 아동기는 보호자에의한 안정적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정책보다는 자녀와 부모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P교수 자문, 2016. 2. 26.). 또한 후자와 관련해서는, 미등록이주아동에게국적을 부여하기보다 아동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최소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영국과 같이 국내에서5년 이상 공부하거나 10년 이상 생활하였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동화되었다고 판단하여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S변호사 자문, 2016. 3. 4.)

2) 보육·교육권

(1) 보육권

<표 Ⅱ-3-3> 보육권 보장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⁹⁾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육 이념)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라면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든지 본인이 미등록신분이든지에 상관없이 차별 없게, 아동 본인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육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예산의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 탓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미등록이주아동가정의어려움이겠으나, 어린이집 입소를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군포 아시아의 창외(2012)의 이주노동자미취학자녀 양육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육료의 100%를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영유아보육법에서 표방하고 있는보육이념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의 보육 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 혹은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 보육지원이 되고 있는 고무적인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 1항 10호의 근거 하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경기도, 2016).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열악한 환경에 처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백선정 외, 2014).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하되, 전담 어린이집은 국내 아동을 보육하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며, 통합 어린이집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 재원 중이고 국내 아동과 통합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현재 58개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총 사업비는 696백만 원이다. 교사 처우개선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행중이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 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하고 있다(경기도, 2016).

경기도의 외국인 보육지원정책사업은 선제적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을 포괄하는 외국인 보육지원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백선정(2015)은 다음에 있어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현재 교사 인건비 지원의 간접적인 접근보다는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산정되어야 한다. 둘째,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과 외국인 근로자 보육지원어린이집 설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육수요에 따른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 지원을 위한 서류(예:월급명세서,전월세 계약서 등)를 발급받기 어렵고,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나외국인 번호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교육권

<표 Ⅱ-3-4> 교육권 보장근거

-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 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 2.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 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 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 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 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같이 교육권은 아동의 권리 중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권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 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이라고 한정함으로써, 미등록이주아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¹⁰⁾

또한 이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외의 아동이 초· 중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¹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 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 1. 25.)" 미등록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제8조에서 의무교육을 초 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 1. 25.)"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등록이주아동 역시 중학교까지 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내린 권고사항인 것이다.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2010년 12월 27일자부터 <표 Ⅱ-3-5>와 같이 개정 되어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에도 교육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표 Ⅱ-3-5>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2010.6.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6.29,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2010.12.27] [대통령령 제22542호, 2010.12.27, 일부개정]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 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 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 한다.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 등" 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 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 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
- 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미등록이주아동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 행령이 개정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계점은 있다. 첫째, 미등록이주아동의 근거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의 일부규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형식이 아니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처지'를 고려하는 특별한 보호 등은 없다는 것이(황필규, 2013)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한 다는 것은 해석에 의한 확대적용이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교장의 재 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실제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 다(석원정, 2013). 셋째,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 록, 스쿨뱅킹 가입, 가정통신문 배포 등 많은 절차에서 아동의 신분번호를 요구받는데, 미등록이주아동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에서 제외되거나 교사/또래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 있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입학이 가능하나, 그 이후 교육권 즉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는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제정 추진 네트워크, 2015). 다섯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에게 자동으로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는 것과는 달리 미등록이주아 동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만 향유될 수 있는 권리인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도 초·중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가 정에서는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 은하·신순영·이경숙·최은미, 2010).

교육권의 실제 행사와 관련하여,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서는 '통보의무'규정을 두어 불법체류로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미등록이주아동의 입학 시에는 불법체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학교의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이 미등록 상태인 것을 알게 되는 즉시 법무부에 신고하게 하여 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강제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시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서 혹은 외국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될 때 통보의무를 면제한 것은 미등록이 주민아동들이 학교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개선된 점이다.

3) 건강권

<표 Ⅱ-3-6> 건강권 보장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 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유익성, 위생 및 환경 위생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 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권은 국민의 권리 이전에 인간의 권리이다. 즉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특히 영유아 및 산전 시기는 기본적인 신체적인 발달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건강관리가 매우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체계 내에서 일반 및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는 건강검진과 필수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상¹¹⁾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미등록외국인이면 자녀 역시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가 직장에 재직 중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까지 있어야 한다. 의료급여법 역시 난민인정자나 국내 체류 결혼이주민은 예외적으로 무상의료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의료급여의 지정은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아동은 자비 혹은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와그 자녀, 국적 취득 이전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난민과 그 자녀 등을 지원한다. 1회당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 절차 서류 작성 시 미등록이주아동 부모의 국내 근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근로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불법체류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지원범위에 있어서도 입원진료·수술에 한하고 있어 일반 진료와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진료 기관수도 적어 접근성이 낮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1. 11. 13).

또 다른 의료서비스 정책으로,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을 통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체류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등하게 무료 접종을 시행중이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그러나, 지자체에따라 관련 예산편성이 불안정하며(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실제로 이를 아는 미등록

¹¹⁾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이주 부모는 거의 없고 보건소 역시 이러한 업무를 이행한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군포 아시아의 창·안산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평택외국 인복지센터·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00년 개정되면서¹²⁾ 미등록이주민도 이 법률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대불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심평원의 심사기간이 오래 걸려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4)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법률안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 법안으로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이 2014. 11. 대표발의 한 법률안으로서, "이주아동의 건강 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데 취지가 있다.

<표 Ⅱ-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차별금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인종, 언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 제4조의7항 신설)
교육권	-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 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 44조의3 신설).

¹²⁾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건강·복지권	-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 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신설).
기타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신설).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신설).

(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 의원이 2014. 12.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출생등록 될 권리와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의료지원을받을 권리 등이다.

<표 Ⅱ-3-8>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주요내용

차별금지	 이 법은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제1조) 모든 이주아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금지하는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법안 제3조 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법안 제4조 제3항)
신분의 보장	- 이주아동은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9조 제1항) - 이주아동은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된다. (법안 제11조) - 치료와 교육의 보장이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법안 제10조)
교육권	-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4조 제 1항) - 이주아동의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법안 제19조)

건강·복지권

- 이주아동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5조 제1항)
- 이주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 (법 안 제16조 제1항)
- 이주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보호 및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법안 제17조, 제18조)

그러나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아동의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법제사법위원회, 2015). 첫째, 불법체류 중인 이주아동에게 어느정도의 보호·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5) 소결

지난 10년간 미등록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도와 법률 개정의 연력을 도표로 정리하면 [그림 II-3-1]과 같다. 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이행과제 등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가 2010년에 개정됨에 따라 미등록이주아동의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불어 2012년에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초·중등교육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의 통보 의무 규정을 면제하도록 개정되면서 교육권 수호에서의 모순점이 다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권의 경우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소외계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00년부터 미등록이주아동도 보건소에서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대불청구제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교육권과 건강권에서는 미약하나마 고무적인 정책의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미등록이주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과 건강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직도 제한점은 많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여전히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뿐이며, 그마저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의무교육이면서도 학교장의 재량에 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유치원과 고등학교 이상 상급학교로의 입학은 현실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건강권 역시 임시방편적이고 불안정한 정책만 겨우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건강권의 수호에 있어 가장 1차적인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체계에는 미등록이주아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출생 등록권, 국적권											출	편·온라인 ·생신고의 입(2015~)
보육권	경기도,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2006~)											
국가인권위원회, 초·중등 개정 권고(뱅령 제19조				
교육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되어 미등록이주아동의 초·중등학교 입·전학 허가(2010~)								등학교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초·중등교육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통보의무' 규정 면제(2012						관과 관 등의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2005~)											
건강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2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불청구제도(2000~)											

[그림 표-3-1]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법률 및 정책 개정 연혁

그러나 교육권과 건강권보다 더 열악한 분야는 출생등록권(국적권), 보육권이다. 출생등록은 그 고유의 의미 외에도 다른 권리 보호를 위한 발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은 허가되지않는다. 2015년에 우편·온라인 출생신고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보

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첫 단계라기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체계의 개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영유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안정된 환경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며 신체와 뇌 발달에 매우 결정적인(critical) 시기로서, 영유아의건강한 발달을 위해 적절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육아지식의 부족으로 보육권을 적절하게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육권은 출생등록권과 더불어 영유아기 미등록이주아동에게 필수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지원되고 있는 정책은 전무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지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법과 정책의 미흡함 속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법률이 2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발의에 참여하였던 S변호사와의 자문(2016. 3. 4.)에서,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화 방향을 수정해야 함을 시사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와 사회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최근 인권위원회는 2014년 8월 아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데 이어 2016년도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인권 보호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어떤 사회적 지원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해외 사례

출생등록, 교육권, 건강권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 유럽국가, 미국, 태국 및 일본으로 나누어 그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보편적인 출생등록 보장 정책을 실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국가의 교육권 지원 정책은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뉘며, 건강권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와 긴

급 또는 필수의 의료서비스만을 보장하는 국가로 나누어진다. 현재 미국에서 는 미등록 아동의 출생등록, 교육권, 건강권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태국과 일본의 출생등록 보장 정책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1) 영국, 이탈리아: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영국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출생등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유럽의 미등록이주민 관련단체인 PICUM(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의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실질적으로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민간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여성의 영국 내 출생 자녀들이 영국에 출생등록을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한 후 42일 이내 지역의 등록사무소 방문 또는 병원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아동의 모가 병원을 나가기 전에 출생한 병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등록은 ① 아동의 부 또는 모, ② 출생이 일어난 장소의 거주자(occupier), ③ 출생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자, ④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자, ⑤ 사산아이거나 거리에서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을 찾은 자가 할 수 있다(『출생과 사망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장1조2항』). 영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없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 아동이 출생한 장소와 날짜
- 아동의 성명과 성별
- 부모의 성명과 주소
- 부모가 출생한 장소와 날짜
- 부모의 결혼 혹은 파트너쉽 날짜
- 부모의 직업
- 모의 혼전 성(姓)

한편, 국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과거에는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1983 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영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모가 영국인이거나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영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영국 국적법에 따라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고 태어난 후부터 10년간 영국에서 거주하였다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속지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탈리아 『보안법(Security Law) 제1조 제20항』은 외국인이 출생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체류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9년 8월 17일, 내무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출생등록 및 친자인정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체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면서, 내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정부는 체류자격을 가진경우에만 출생등록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이러한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안법은 허가되지 않은 입국이나 체류는 범죄이며, 5,000에서 1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민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Law No. 40 of 6 March 1998) 제17조2항』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추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신 또는 아이를 갓 출산한 여성에게 일시적으로라도 체류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출생등록을 출생선언(Dichiarazione di nascità)이라고 일컬으며, 구두로 진행된다. 선언은 ① 출생이 일어난 병원 또는 조산원 (nursing home), ② 출생이 일어난 지역, 부모의 거주 지역 또는 (부와 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모의 거주 지역의 시청에서 할 수 있다. 병원에서 할 경우 출생 후 3일 이내, 시청에서 할 경우 출생 후 10일 이내 하여야 한다. 선언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다르다. 혼인한 경우 ① 부 또는 모, ② 특별변호사(loro procuratore speciale), ③ 출생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④ 출생을 목격한 자가 할 수 있다.

한편 국적과 관련해서는 이탈리아의 관련법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였 을 경우, 성년이 됨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 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적국에서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였다면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역시 일부 속지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유럽 국가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있다. 프랑스는 학교입학절차에서 모든 연령의 외국인 자녀에게는 체류 허가증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Organic Lawon』은 합법적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스페인에 있는 외국인 아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복지 혜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육 권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 규정에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외국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학교에 출석해야만 하며 모든 이탈리아 학교에서 외국인 아동의 입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취학은 어떤 학년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폴란드와 영국은 특별히 미등록 아동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모든 아동은 어디서든지 법의 보장을 받아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암묵적으로 포함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폴란드의 『학교교육 시스템 법 제94조』는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인 아동도 공립초등학교와 고등학교, gymnasia' 학교에서 필수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법 제13A』는 지역에 있는 의무교육 연령(5~16세)의 모든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는 법적 의무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교육권에 비해 건강권은 국가별로 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한다. 스페인만이 유일하게 18세 이하 외국인에게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조건으로 건강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특별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미등록 아동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공헌활동과 가족에 대한 규범 L251-1』은 규정에 따

른 요구사항의 충족 없이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한 모든 외국 인 본인과 부양가족들은 국가의료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국가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이 포함된다. 벨기에의 『왕실칙령』에 의하면 국가의료보장은 미등록 아동이 무료로 "긴급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전문어린이가정센터로부터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예방관리 차원에서 상담 및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6세 이후에는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긴급한 의료지원"의 상세한 정의는 없으나 법령에서는 독점적 의료지원이어야 하며, 의사에 의해 인증을받은 경우에만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네덜란드 『이민법 제10조』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호"와 공공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호"의 상세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Klazinga Committee에 의한 보고서에서 '책임과 적절한의료보호'로써 긴 시간 거주하는 곳 어디서나 기본적인 의료보험 아래 제공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미등록 아동은 모든 비용을 의료적 치료에 지불해야 하나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다면, 의료보호제공자가비용의 80~100%를 부담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국민이민법 T.U. 제35조』는 항목 및 체류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전국적인 외국인들은 긴급하거나 필요시에 공공 및 공인 외래 병원 치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질병이나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예방의학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특히 1989년 11월 20일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건강보호차원에서의 보장이 발전하였으며 6세 이하 아동의 모든 의료보호는 이탈리아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6세 이후의 미등록 아동은 미등록 이주 성인과 동일한 조건의 의료보호를 받게 된다. 더 긴급하고 필수적인 의료보호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미등록 아동은 외래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면제 또는 지급지연의 적용이 가능하다.

영국 『NHS 법정장비번호(614)[해외방문자에 대한 요금]』에 의하면, 미등록 아동들은 병원치료나 진단을 받기 위해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즉시 필요하고 긴급한 치료인 경우에는 환자가 지출수단을 입증할 수 없는 경

우더라도 치료는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미등록 아동은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사)로부터 일차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응급치료, 가족계획, 전염성 질병과 심각한 정신건강질환치료 등은 국민의료보험으로 무상 치료가 가능하다.

3) 미국: 출생등록, 교육권, 건강권 보장

미국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의 법적 신분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출생등록은 태어난 주의 인구통계청 (Office of Vital Statistics)을 통하여 가능하며, 사무소는 출생 후 5일내 아동을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출생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후 인구통계청에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출생 후 1년 내 출생등록을 할 경우, 출생증명서에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되 출생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출생등록은 아동이 출생한 병원 또는 기관에서 처리된다. 출생 후 5일 이내,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출생증명 서를 준비하고, 출생증명서를 인구통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① 출생 당시 혹은 직후에 관여한 내과의 ② 출생 당시 혹은 직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 ③ 아동의 부 또는 모 ④ 출생이 일어난 장소의 주인 순서로 출 생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아동의 부 또는 모보다 출생에 관여한 의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자가 우선권을 가진 점이 특이하다.

미국연방법원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라도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미등록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명시하였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게 교육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비자격 상태에 대해 책임이 없는 아동에게 평생에 짊어질 고난을 부과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살아갈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출생등록에서 설명했듯이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출생

한 자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의료보조제도 등의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에게는 예방접종, 전염병 치료, 응급의료서비스 등 제한적인 의료복지혜택만을 제공하고 있다.

4) 태국: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태국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라, 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지 지역사무소에 출생 후 15일 이내 신고 되어야 하고, 집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하는 지역의 지역사무소에 출생 후 30일이내 신고 되어야 한다. 200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잇따라 2009년 내무부가 출생등록에 관한 지침명령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태국정부는 태국 유니세프와 함께 온라인 출생등 록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출생등록 우수사례로 꼽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면, 지역사무관(district officer)은 보고에 대한 증명으로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할 의무를 지닌다. 출생등록을 하면 출생 장소와 등록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급되는데, 모든 과정을 거칠 경우 총 3가지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생 시의료기관이나 조산사 등 전문인으로부터 '분만증명서(delivery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증명서는 법적인 공적문서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상시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분만증명서는 태국의 주민등록법 (Civil Registration Act 1992) 제23조에 따라, 법적지위에 상관없이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를 통해 공식적인 출생등록 절차를 밟기 전, 지역 등록기관(local registrar)을 통해 '출생신고증명서(certificate of the acceptance of the birth report)'를 받을 수도 있다. 지역 등록기관의 역 할은 법에 따라 마을 촌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출생신고증명서 발급은 주 로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분만증명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증인의 성명, 분만 조력인, 출생 장소 등 출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5) 일본: 호적법 상 외국인 출생등록 의무화 및 교육 지원

일본의 호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각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호적법 제25조 2항은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일본에서 출생했을 경우 일본인과 동일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상의 출생신고 의무대상에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단기체류자, 중장기체류자, 난민신청자(임시체류허가증 소지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된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출생아의 외국인 주민표(residence certificate)가 작성된다(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 45호).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1통,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이 있다. 외국인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전 까지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로 분류되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다.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출생아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행정, 사회 서비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아의 출생사실 증명을 위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할 수 있으나 출생증명은 할 수 없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의 주거등록제도에 통합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외국인등록제도 하에서 주민표가 아닌 외국인등록 원표가 작성되어 외국인주민의 기본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어 왔으나,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외국인체류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표가 세대별로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외국인대장)에 작성하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배경에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대책에 따라 국경관리를 강화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성의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중장기체류 외국인의 행정적 편의향상을 위해 기존의 법무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적으로 관리해 온 체류외국인 정보를 법무성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출생아의 국적은 속인주의에 따라 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합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국적취득을 위해 외무성에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인증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국 대사관에 외무성에서 인증 받은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아의 국적취득 신청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일본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적으로 취학통지서가 나오고, 이때 취학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에서는 불법이나 합법 등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류특별허가'이다. 이는 일본에서생활한 지 오래되어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오히려 적응이 어려울 것이 확실한 소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그 부모의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는 제도이다. 단, 아동이 국내 출생 후 10년간 체류하였으며 그 부모가 기타 범죄를 범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표 Ⅱ-4-1> 주요 국가의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과 체류권,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 현황

	출생등록 및 체류권	교육권	건강권
프랑스	프랑스에서 출생하면 프랑스 국적을 부여	학교 입학 가능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가족은 국가의료보조를 받을 수 있음
스페인		학교 입학 가능	18세 이하라면 자국민과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벨기에		부모(가디언)와 체류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6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네덜란드		예외적으로 교육권만을 허용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 이용가능
이탈리아	출생등록 가능일시적 체류허용(임신 혹은 출산)부분적 속지주의	학교 입학 가능	6세 이하 아동에게는 필수의료보장을 제공
폴란드		학교 입학 가능	긴급한 의료지원은 국가에서 제공
영국	· 출생등록 가능 · 부분적 속지주의	학교 입학 가능	일차적 의료서비스 및 일부 질병에 한하여 국민의료보험 이용가능
미국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시민권을 부여 (속지주의)	무상으로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	예방접종, 전염병치료, 응급의료서비스 가능
태국	· 출생등록 권리인정 · 국적취득권 부여		
일본	· 출생등록을 허용 (주민기본대장에 기록) · 재류특별허가	중앙정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통지서 배부)	

Ⅲ. 미등록이주아동 포토보이스 연구

Ⅲ. 미등록이주아동 포토보이스 연구

1. 포토보이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등록이주아동을 현재 보육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주아동의 보육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포토보이스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와 보육 현황을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제적인 대응방안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와 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포토보이스 결과에 대한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전사성(transferability)과 확실성 (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을 제안하고 있다(홍현미라ㆍ권지성ㆍ장혜경ㆍ이민영ㆍ우아영, 2010). 이에 본연구에서도 포토보이스 분석결과를 참여자들과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의도했던 방향과 상이하거나 수정 및 보완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적극 반영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포토보이스 연구 참여자는 미등록이주아동과 오랫동안 활동해 온 현장실 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활용하 였다. 참여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아름 다운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 지원 사업 대상인 기관과 미등 록이주아동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목록을 취합한 뒤, 연구에 관한 설명과 함께 연구 참여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와 관계없이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참여자 명단으 로 확보한 뒤, 참여자로 선정하는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였다. 명단으로 확보 된 연구 참여자는 현재 미등록이주아동 현장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실무자와 대표였고, 최대한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날짜와 장소를 진행하였지 만 예비모임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있었다. 최종적인 연구 참여 자는 다음과 같다.

<표 Ⅲ-1-1> 연구 참여자

	관련	경력		
참여자	어린이집, 다문화학교	이주민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소속 기관(직위)	주요업무
참여자 1	_	6년	이주민센터(팀장)	이주아동 보육·교육 사업
참여자 2	13년	3년	이주아동어린이집 (원장)	이주아동 보육·교육 사업
참여자 3	3년	-	이주아동어린이집 (원장)	이주아동 보육·교육 사업
참여자 4	-	13년	이주민센터(원장)	이주여성인권 상담
참여자 5	-	13년	이주민의료NGO (팀장)	이주민의료지원, 건강권보호활동
참여자 6	3년	7년	이주민센터 (사무국장)	다문화관련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연구과정

포토보이스 조사는 2016년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 진행하였다. 포토보이스 조사는 본격적인 포토보이스 실시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면접조사를 시작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연구진과 연구 참여자가 모두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 소개와 연구 참여자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의의와 목적을 공유하고 연구방법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포토보이스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설명문에 이어 연구윤리에 입각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으면서 인터뷰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포토보이

스 연구란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연구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참여자들을 독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가 어떤 주제로 사진을 찍어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전송하고 발표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하였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수첩을 준비하여 사진을 찍은 장소와 의미, 연상되는 단어의 기록을 정리하고, 각 주제별 10장의사진 중 5장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포토보이스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접조사는 '미등록이주아동'에 연상되는 이미지를 찍어오는 주제였다. 두 번째 면접조사의 주제는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정책 혹은 보육'과 '보육교사'와 관련한 이미지를 담아오는 것이었다. 1차 포토보이스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2차 포토보이스의 질문에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추가되었다. 포토보이스 면접조사는 연구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인터뷰는 일주일간격으로 진행하였고, 소요시간은 1회당 3시간이었다. 인터뷰 장소는 아름다운 재단 회의실과 연구 참여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장소로 선정하였다.

포토보이스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양해 하에 녹음을 실시하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1-2> 포토보이스 면접질문

- 1. 미등록이주아동이란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오기)
- 2.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정책 (미등록이주아동에게 필요한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오기)
- 3.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어오기)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포토보이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조사는 1994년 Wang and Burris에 의해 개발된 연구기법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주변화 되어 있는 사 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기법을 말 한다(이봉주·홍현미라·장혜림, 2012). 포토보이스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 고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대상자가 지역의 강점과 관심사를 기 록하고 숙고하도록 한다. 둘째, 사진을 두고 소그룹 토론을 통해 지역의 중 요한 이슈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지식을 촉진한다. 셋째, 정책입안자에게 전 달하는 것이다. 포토보이스는 특정한 참여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다양한 그룹 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으로 인해 기존의 사정된 욕구들을 지역 참여자와 함께 연결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를 통해 얻는 장점을 살펴보면 첫 째로, 연구자는 전통적 수단으로 알려진 세계를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세계를 볼 가능성을 얻는다(Wang, C. & Burris, M. 1997). 둘째, 포토보이스는 시각적 영상이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담는 도구인 사진을 통해 설명적인 위임성을 띄고 있다. 셋째, 포토 보이스의 과정은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의 창의성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연구 방법 자체가 여러 지역사회의 행동 셋팅의 샘플링을 용이 하게 한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는 환경(순간과 생각만큼)은 전문 적인 연구자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 방법은 지역 참여자에게 욕구사정과 프로그램 개입 사이의 기간 동안 지속 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포토보이스는 참여자들의 설명을 통해 각자의 생각과 더불어 다른 구성원의 이야기들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사진을 통해 다양한 현상에 포착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 다. 이상 살펴본 것에서 볼 때 포토보이스는 개인의 문제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공한다(Catalani, C. & Minkler, M. 2010)는 점 에서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또한 개인이 그들의 삶속에서 초기의 테마에 관 한 이슈나 문제점, 고민 등을 카메라로 찍은 후 그들의 경험들을 직접 연구 자와 공유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조

및 정책의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적 연구방법이다(Wang, C. 2006).

따라서 포토보이스의 목적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자로서 당사자 스스로 기록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매개로 하여 참여자들의 삶의 의미에 관한 진솔한 설명을 듣기 위함이다.

(2) 포토보이스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 시간 전에 연구보조원에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된다. 2회에 걸친 포토보이스 조사는 각 질문 별로 촬영한 7~8장의 사진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고 각 사진에 따른 참여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일 부 연구 참여자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사진을 찾기가 어려워 인터넷이나 책 등에서 찾은 이미지를 찍어 온 경우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선정한 사진들은 인터뷰 시간에 프로젝터로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먼저 참여자별로 준비한 사진과 그에 따른 설명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다음 참여자의 차례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하고 전사본을 작성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포토보이스 연구에서는 사진을 연구 참여자 자신의 사고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포토보이스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가촬영한 사진에 대한 설명, 참여자간의 집단면접에서 서로 소통한 사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Van Manen(신경림·안규남 역, 1994)의 자료 분석 방법을 근간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녹음된 면담 내용을 필사한다. 둘째, 필사된 내용과 녹음내용을 비교 검토한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내용별로 텍스트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넷째, 분리된 텍스트를 참여자의 느낌이나 생각에 맞추어서 주제진술로 분리한다. 다섯째, 분리된 주제 진술을 범주화하였다. 여섯째, 정리된 일반 용어를 문헌고찰 등과 비교 검토하여 본질적 주제를 결정한다.

2. 포토보이스 분석결과

1) 미등록이주아동,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보육현실

(1)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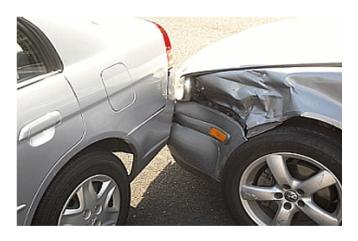
아동에게 안전(safety), 영속성(performance), 안녕(well-being)13)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아동에게 허락된 것은 이 중 아무것도 없다. 자식을 맞이하게 된 부모의 기쁨도 잠시, 미등록이주아동은 출생부터 축복받지 못하며 고난의 시작이 예고된 채로 태어난다. 태어난 이후에도 발달상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불안이라는 일상을 매일매일마주하며 살아간다. 한국인인 것 같으면서도 한국인이 아닌, '있는데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동들은 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주변인이자 피해자이다. 이들은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로 인식될 뿐이나, 실은 이러한 문제행동 뒤에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고립이 숨겨 있다. '미등록'이라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수하며살아가야 하고, 불량한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한다. 부모에게는 힘이 되고 방패막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기대와 역할이 본인들을 얽매고 있는 쇠사슬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어려움속에서도 저마다 다양성을 품으며, 지금 현실은 깜깜한 밤 같지만 밤하늘을 비출 빛 같은 존재들이다.

①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 그러나 축복받지 못하는 생명으로서의 고난의 시작¹⁴⁾

부모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처지가 어떻든 간에 부모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식이지만, 엄마가 미등록이다 보니 제대로 산전 관리를 받을 수도 없어모성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실한 산전관리는 조산으로 이어지고, 조산은미숙아로,미숙아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의 위기로 이어진다. '미등

¹³⁾ 미국 아동국(Children's Bureau)의 주요 목적. 출처: 자료: 미국 아동국(Children's Bureau), www.acf.hhs.gov/programs/cb/fact-sheet-cb.

¹⁴⁾ 포토보이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록이주아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닌데,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을 맞게 된다.

결국 OO는 뱃속에 있을 당시 아빠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신고를 무마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느라 탄생의 축복도 받 아보지 못한 채 아빠와 이별하게 되었다.

정말 무슨 의미로 태어났는지 모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틀린 거죠. 어떻게 바라보면 정말 축복받고 태어난 거고, 어떻게 바라보면 진짜로 축복받지 못할 그걸로 태어난 거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나의 자식이고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소중한 아이로 태어난 건데. (참여자 6)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미등록이니까 제대로 산전 관리 못하고 그러면서 애기가 정상적으로 만삭이 돼서 잘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는데. 이미 그 안에 엄마의 영양 상태라든지, 정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산하는 사례를 꽤 저희 쪽에서는 많이 접하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나는 순간…(중략)…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에 위기인거예요…(중략)…특히 미혼모인 엄마들은 제일 더 위기에요. 사실 미등록가정 중에는 사실혼관계가 많거든요. 가정을 꾸렸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족 구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 엄마 혼자서 키우다보면 뭐, 애를 조산하게 되면 치료 포기하거나. (참여자 5)

미등록으로 있다가 OO가 12개월 때 쯤 저희 어린이집에 왔는데 엄마아 빠가 맞벌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자궁 외 임신 수술을 하고 몇 달 후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엄마하고 OO는 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접촉사고를 냈던 거예요, 아빠가. (참여자 3)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이한테도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물론 부모의 이주로 인해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부모 따라서 자기의 선택권이 없었던 자유의지가 없었던 아이들에 대해 서 생각해 볼 때. (참여자 2)

② 발달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있음



영유아기는 생애 중 어느 시기보다 발달 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시기로, 이를 촉 진할 수 있는 자극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 등록이주아동들은 이 러한 영유아시기에 또래나 부모, 교사들

로부터 자극을 받기는커녕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살고 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어둠이 깔리면 그제야 집에서 나올 뿐이나 이미 그때는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도 따스한 햇살도 없다. 낮에도 밖에도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치명적인 외로움뿐이다.

대부분의 이주 가정이나 이주 아동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고립인데요. 그 지역사회 안에 있어도 동네 아이들이나 다른 일반 가정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중략)…고립된 이게 얘네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한참 그 여러 자극권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데… 심각하더라고요. (참여자 5)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저희 동네 놀이터가 있는데 딱 한 8시가 넘어가면 이주가정 엄마랑 아이 둘이 나와서 놀아요. 어두워지고. 낮에는 한국아이들,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어두워지고 집에 들어가면 그때 자전거를 끌고 작은아이는 세발자전거, 큰아이는 놀이터 뛰어다니고 엄마는 앉아있고... 몇 번 보니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처 어디에 사는데 낮에는 나오면 너무 눈에 띄니깐.. (참여자 5)

③ 일상에 깊게 도사린 단속과 추방당함의 불안



늘 단속과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을 갖고 사는 미등록이주민인 부모와 마찬가지로 미등록이주아동 역시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잡혀갈 수도 있 다'는 사실이 뇌리에 박혀 있어 불안하다.

이러한 불안은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찰아저씨가 잡아 간다.'는 상투적인 말에도 경련을 일으킬 만큼 일상 속 깊게 도사리고 있다. 한국에서의 생 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을 걷듯이 지내고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날 서린 경계 심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거리에서 단속 되가지고 애랑 같이 바로. 근데 저렇게 단속기간이 막 강화됐을 때, 저렇게 간 케이스가 두 세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 미등록이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떠는 거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참여자 3)

저희가 보육실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소방차가 있고 경찰차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경찰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이랬더니 자기 무섭다는 거예요, 잡아간다고, 잡아간다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확실히 알았던 사례가 뭐였냐면 저희가 봉사자가 오는데 이제 아이들 보육하는데 도와주는데. 봉사자가 왜, 한국사회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찰아저씨가 잡아간다."이러니까, 얘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자지러진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이 자체에서, 심리상태에서도 그렇고 아이가...(참여자 1)

아휴 보면 직업병 비슷하게..(하하하) 아이들 그런 것을 물어보는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인데 낯선 사람이 가서물어보면 더 경계심이 높아지니깐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아 있구나...' (참여자 5)

④ 정체감의 혼란, 나는 누구지?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마다 한국 사람이다, 콩고 사람 이다 라며 스스로 생 각하는 정체성이 있었 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그들을 한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OO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확신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불유쾌한 딱지일 뿐이다. 어디에도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탈 수도, 비행기를 탈 수도 없다.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느 곳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희망은커녕 몇 분, 몇 초 후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정체감의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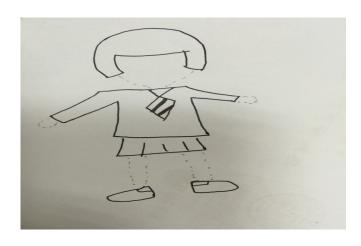
현실과 의식이 괴리된. 자기가 한국인이래.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 생각도 안 해주는데. (참여자 2)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불법인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있다가, 같이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가려면 아이들은 의료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잖아요. 그게 없어서 얘가 못 간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법이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런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 엄마 아빠는 얘길 안 해줬었고.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초등학

교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자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콩고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기가 불법인거를 제주도 공항 상황에서 알았다는 거죠. (참여자 6)

애기들은 장래 희망도 꿈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분, 몇 초, 몇 년 뒤, 며칠 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여자 1)

⑤ '미등록'이란 있는데 없는 존재가 아닌 숨겨진 존재



미등록이주아동은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있으나 '투명인간'처럼 없는 취급을 받으며, 숨겨져 있는 존재이다. 있는데 없는 존재. 우리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으나 다수의 사람

들은 한국 아동과 미등록이주아동을 굳이 구분해서 '미등록이야'라고 낙인 찍는다. 이들은 '빼 버리고 싶은 존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 '뭔가를 금지시켜야하는 존재'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이제 왜 그런, 어떤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있는데 없는" 문제라고들 하잖아요.(참여자 1)

미등록아동들은. 큰 프로젝트 안에서 직접적으로 지명되어지기 보다는 그 냥 숨겨져 있는 존재에요. (참여자 2)

만약에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거에서 또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다얼굴이 있고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가면은 우리가 그냥 또 가면이라고 지칭을 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미등록이야 라고 지칭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중략)...같이 여기에 포함된 모습인데 쟤만 우리가 특히 "틀리다, 쟤만 다르다, 쟤만 싫다, 쟤만 예쁘지 않아, 쟤 뺄 거야, 쟤 빼버리고 나는 다른 인형을 넣을 거야." 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참여자 6)

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거는 뭔가를 제한하고 뭔가 지금 아까 불법 주차금지 이렇게 하듯이 뭔가를 제한하고 하지마라는 거잖아요. 너는 여 기 있으면 안 돼, 너 금지야, 너 출입 금지야. (참여자 4)

⑥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주변인이자 피해자인 아동



우리나라는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1991년도 에 비준한 이후로 일 반 아동들의 권리구 현에 대해서는 다양 한 방법으로 많은 정 책적 노력을 이뤘다 고 평가하고 있으나,

미등록이주아동은 언제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단속과 차별은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고 해도 '표가안 되는 주변인'인 미등록이주아동의 상태처럼 '계류' 중이다.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좋은 일이라며 동참할 듯 보여도, 실제로는 늘 관심 밖이다.

이렇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을 해서 우리나라가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서 차별 없이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돼오고 있잖아요. 자스민 의원, 국회의원이 했을 때도 그냥 정권 말이라 넘어가고, 아직도 그대로 있고.... (참여자 3)

이거 이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하나...하여간 전체적으로 제도는 제도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등록이다 보니깐 그것부터 안 되니깐 어렵죠. (참여자 4)

웃고 있는 표정, 온화한 표정, 화가 난 표정, 많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나도 어떤 표정을 갖고 있나. 남들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지만 안에서는 아우, 그걸 뭐 그렇게 미등록들 그걸 내가 신경써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발 벗고, 아니면 누가 한다고 하면 그래 한 번 따라 해볼게 내가 가서, 동참해볼게. 라고는 하지만. 정말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그걸 내가 막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은 안 나오지 않나. (참여자 6)

저희한테 협조는 잘 안 해요 시청에서. 협조는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은 입에다(입으로) 하는데, 다른 것은 ... 소외되고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미워해요, 그쪽에서, (하하하, 다 같이 웃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 공무원들이. (참여자 4)

⑦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



미등록이주아동들은 부모와도 접촉 시간 이 길지 않고 한국어 에도 노출되는 시간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육기관에 와서 의 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은 경우가 많아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로 여겨지기 일쑤여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해 민감성이 없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튀는 행동을 한다며 벌을 세우고 나무란다.

말이 안 되니까, 계속 한국 보육 교사들이 구석에서 계속 세워서 벌을 세운다던지, 말을 못하니까 떼를 쓰면 계속 구석에서 혼을 낸다던지 이러니까. 부모가 그걸 애가 점점점 부정적인 행동을 하니까. 뭔가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뭐 했는데 아이가 자꾸 튀는 행동을 해요, 떼를 써요...(중략)...나중에 실제로 말을, 부모님은 필리핀 분들인데, 얘 형제들은 주 언어가 없어요. 한국어든 영어든 필리핀어든 어떤 언어로도 못하는 거예요. 주 언어가 잡힐 수 있는 7살, 6살인데

도 불구하고...(중략)...둘째 6살 애는 정말 심지어 엄마 아빠도 못 할 정도 고 계속 기저귀도 차고 있었고. (참여자 5)

몇 달 데리고 있으면서 워낙 애도 컸고 우리는 너무 장소가 협소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예,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리고 31개월인데 말을 한 마디도 못했어요. 뭐라고막 하는데 저게 필리핀어로 엄마라는 말이냐 물어봤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그냥 옹알이라고. (참여자 3)

⑧ 문제 행동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불안과 고립은 분노로 표현됨



미등록이주아동들은 불완전한 의사소통, 지체된 발달 상태, 예 상치 못한 행동 등으 로 흔히 '문제 아동' 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그 문제 행동 이 면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숨겨져 있다. 또래와의 접촉이 중요하지만 교류할 수 없는 이들은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언어발달은 정서발달 등의 문제로까지 여파가 이어진다. 또한 아직 어리기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의 억압과 불안, 고립, 분노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래 때 아이들이 또래 언어를 배우는 거는 사실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배우는 유아 언어를 통해서 빨리 하는데 (배우는데), 그런 교류가 안 되니까 상당히, 저희 쪽에서 접한 문제는 언어 발달 지체라든지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정서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심리정서 문제라든지. 다 전체적으로 맞물려서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3살이면 3살 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을 가든 좀 더 커서 유치원을 가든 계속 문제적인 그런 행동이 결국 나타나는... (참여자 5)

그 날 아침, 그 사진 찍은 그 날 아침에 7시 10분에 오는 애가 안 왔어. 걔가 굉장히 힘든 친구야. 많이 힘들어. 저는 걔가 무슨 발달에 장애가 있다거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걔가 말 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억압들을, 어떤 것들을 표현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구 말도 안 듣고 마~구 마음대로, 마~구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거지. 저는 그냥 몽골의 초원에 풀어놓으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애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다 묶어놓으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자극과 압박과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자기를 표출해내고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참여자 2)

분노에 찬 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에 찼다는 것은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그게 간다는 거죠. 엄마가 불안한 거는 표현은 안 했다고는 치지만 이 아이는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를 볼 때 진심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안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도 불안하고. 울고 땡깡 피우고 매달리고, 업어 달라그러고 먹는 것도 싫고. 다 그런 표현이 들어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참여자 6)

⑨ '미등록'이라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수하며 살아감



'미등록이주아동'이라 는 약점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 리를 스스로 포기하 게 만들고, 하루아침 에 가족으로부터 이 탈하게 만들고, 억울 한 일을 당했어도 뒷 걸음치게 만든다.

신고로 인한 강제추방이 무서워 웃돈을 주고 교통사고 합의를 한 후에도 OO는 아빠와 떨어져 본국으로 들어가야 했고, 부모는 아이들을 곰팡이 핀 집에서 벗어나서 살게 하고 싶지만 돌아오는 건 집주인의 부당한 횡포

뿐이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는데다가, 옮겨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무엇보다 교사의 신고가 무섭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아동이 아니었으면 겪지 않았어도 혹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일인데, 불법체류로 한국에 있는 아동이라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아이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야만 한다.

갑자기 엄마하고 OO는 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접촉사고를 냈던 거예요, 아빠가. 회사에서 내 준 차가 있었는데. 미등록 이니까 신고를 못하잖아요. 모아두었던 돈을, 1600만원도 모자라서 고향집에서도 보내달라고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참여자 3)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나머지 월세를 다내고 나가라고. 전 정말 그 집이 불법개조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부동산하는 사람이었고, 집주인이.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미등록아동이기 때문에…(중략)…갑자기 잡혀 들어가면 밀린 임금, 집보증금, 뭐 이런 거. 보증금도 나중에는 집 주인들이 잘 안 줘요. '남은 월세 까고 나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겪는 현실이죠. (참여자 3)

부모도 분명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학대하는 걸 아는데 미등록인 게 노출 되거나 단속에 걸릴까봐. 옮겼는데, 그걸 문제제기 안 하고 옮겼는데, 옮 긴 데서도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참여자 5)

몇 년을 더 있다가 뭐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되는데, 보험이 안돼요. 일단은 여행자 보험이 안 되고...(중략)...우리가 흔히 아이들 체험학습보낼 때 관광버스로 많이 가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관광 그거할 때는 보험이 아이들은 안 되고. 보험이 안 되도 애들은 가고 싶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참여자 6)

⑩ 불량한 영양상태 그리고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인 미등록이주아동, 기본 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함



미등록이주아동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현실 중에 하나는 불량한 영양 상태와 주거환경이다. 대부분 이주가정은 경제적인어려움이 있다 보니집에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기는 면역력에 취약한 시기인데, 주로 곰팡이가 핀 지하방, 가건물 등에 살다 보니 위생 관리가 잘 안되어 장염, 폐렴 등의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하게 자랄 권리는커녕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 형제는 다 겪는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부터, 여기도 이제 그 반 지하에 살아서 완전히 집에,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맞지 않는 집에 살고. 먹는 것도 굉장히 영양상태가 안 좋고. 우리가 아는 미등록이주아동 하면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여서... (참여자 5)

처음에 올 때부터 조금 곰팡이 냄새가 났었어요. 근데 음, 실례가 될까봐 집에 가보자는 얘기를 못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면 (옷을) 다 갈아입히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얘가... 폐렴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중략)...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두 번째 또 입원을 했어요. 폐렴으로. 그래서 그 때는 이제 집에 한 번 가보겠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지하인거에요 집이. 그러니까 한 쪽은 이렇게 뭐라 할까 언덕이라서 한쪽은 조금 밖으로 나왔는데 계단 밑이라 굉장히 습하고 안쪽이기때문에 거의 완전히 지하나 다름없었어요. 창문 요만큼 올라왔었는데... 집에 가니까 아.... 주방 들어가는 문에서 옆에 주방 쪽으로도 다 곰팡이고, 욕실 있고 안방이 있었는데 안방에 가니까 장롱으로 이렇게 끌어내니까

전부 곰팡인 거예요. (참여자 3)

좀 무너져가는 건물들도 있고. 그런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거주를 해요. 그 공장의 위에 가건물로 지어 놓은 기숙사 형태의 집, 원룸 형태의 집에서 살거나 혹은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과 연계 사업을 잠깐했었는데 그 때 가정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심지어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겨울에 돼지꼬리로 물 데워서 아이들을 씻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일단은 아이들을, 미등록이주아동을 생각을 하면 어쨌든 아동이잖아요. 아동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참여자 1)

① 부모의 장시간 노동, 부족한 육아 정보 등으로 열악한 양육 현실에 처해 있는 아이들

해가 짧은 겨울이 되면 이주아동들은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이주민센터 어린이집으로 와서 밤늦게 귀가하게 된다. 부모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의 부모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해서 한국 사람들이나 체류권을 가진 이주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자녀들은 하루 종일 집에 방치되기 일쑤이다. 장시간동안 이들을 맡아줄 어린이집이라도 있다는 것은 행운인 셈이다.



또한 부모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하루의대부분을 일하며 지내고 가족과도 떨어져있다 보니 육아상식도부족하고, 병원에 데리고 갈 형편도 되지 않아 아이들은 방임 아닌 방임상황에 놓일수밖에 없다.

저 어린 나이에 7시 10분에 와서, 어떤 앤 자요. 와서, 자요. 어려서부터 참 곤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가, 아이들이. 뭐 얼마나 벌어서 잘살려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아동의 부모) 7시 10분에 보내는 이유는 그때 안 나가면 어차피 일을 못 해요. 짤려요 짤려. 늦게까지 일 안 하면 짤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열악한 환경에살아야 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참여자 2)

저희는 처음에 한 살짜리가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 하란 얘기 들으면 도대체 집에서 애를 어떻게 케어 하길래, 방임 아니냐! 싶었는데 방임이라기보다 사실 아까 말했듯이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또 엄마가 애를 건강하게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얻기 어렵고, 또치료비도 많이 나가니까. (참여자 5)

부모도 너무 육아에 대해서 모르고. 다 떨어져서 혼자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참여자 3)

⑫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부모와 아이들



미등록이주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무엇이든지, 부모는 자녀가 한국에서당당하게 잘 자라 그들에게 희망과 힘이되어주는 존재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한국말을 잘하게 된 아이들은 부모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신이 불법체류 단속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되기도 하면서 불법체류라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어쨌든 엄마아빠가 이주민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야하고. 대다수 부모님들, 저희 쪽에서 컨택한 부모님들은 단속이 되지 않고 그런 다면 아이를 여기서 잘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세요. (참여 자 5)

여기 사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배운 아이들은 부모의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부모의 어떤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참여자 2)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얘가 애기 때, 더 어렸을 때. 근데 그 당시 왜, 애기가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애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걸리더라도 애기가 학교 입학했다, 어린이집 뭐 어디에 입학했다는 그, 그 있잖아요. 재학증명서 같은 걸 하나씩 갖고 다니면 잡혔을 때 "나 이거 있어."라고 하면 풀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응응.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 엄마는 어디를 외출하거나, 서울이나 어디를 갔다 친구를 만나고 올때도 누가 있어야 돼요. 잡히면 안 되니까 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항상. 공장가서 따로 일 하는 때 빼고는 항상 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를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중략)...얘는 놀고 싶고안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끌고 가는 거야. 그걸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애기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애기 때문에. 얘가 항상 끌려 다니니까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시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게 정말 자기마음에 있는 그런, 제가 이제 이거 발표하는데 사진을 찍어오는데 저 쇠사슬만 생각이 나요. (참여자 4)

③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다양성을 품으며 사회에 보석과 빛이 될 존재 라 믿음

미등록이주아동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암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그들의 부모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언젠가는 더 나아지고 변화할 거라는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가능성 이다. 미등록이주아동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이나, 아이들에게 잠재 되어 있는 장점들과 다 양성들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은 다채로운 색깔을 가득 품고 있는 나비와 같으며, 우리사회에 보석과 빛이 될 존재들이다.

이 사람들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게(한국 생활) 쬐금 낫다. 이런 것들에서 희망, 언젠가 변화할거라는. 저보다 더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저거는 이제 기관의 로고 중의 하나, 나비인데요. 사실 뭐 미등록이주아동하면 너무 또 어둡고 힘들고 이런 것만 사실 떠올리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아이들 중에 또 잠재되어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게 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장점들을 부모나 접한 단체나 사람들이 같이 키워서 잘 자라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완전 잘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장점들, 단순히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의 장점들이 잘만 안에서 같이 키운다면 좋은 장점으로 발휘 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싹이죠. (웃음) 어쨌든 매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잘 좀 지원을 해주면. 그게 보육적인 거든, 의료적인 거든, 교육적인 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만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이 사회의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을까. (참여자 5)

열악한 상황에서 크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란 건 정말로 알수 없다.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자랄지알 수 없고, 또 한국말을 잘 못하고 더러운 곳에서 자랐어도 정말 알 수 없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참여자 4)

(2) 건강한 존재로의 성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그러나 성긴 구멍의 안전망

평생건강의 시작은 영유아시기에 달려있다고 일컬어질 만큼 영유아 시기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나, 미등록이주아동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고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어서 안전망이라 부르기 무색한 성긴 구멍의 안전망이 전부이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가볍고 일반적인 질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하니 질병이 반복되면서 더심해지고, 더 큰 병으로까지 발전하며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영유아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의료비 몇 푼의 문제라고 보기에 어렵다. 사후 의료제도의 부실과 함께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있는 검진 기회의 박탈, 예방접종 기회 부족, 불량한 환경과 먹거리 등 의료사각지대에 덩그러니 놓인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① 적시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의 반복과 악순환이 지속됨



영유아 시기는 일반적 으로 성인기보다 면역 력이 약하며, 특히 돌 이전의 건강상태가 평 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도 있기에 건강한 성장 을 위해서도 면밀한 건 강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미등록이주아동들은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때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못한 질병의 반복, 증상의 악화와더 큰 병의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대다수 저희 쪽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감기 좀 지나서 폐렴 좀 지나서 중이염 그거 더 지나서 만성 중이염 나중에 수술 하고. 미등록이다 보니까 뭐 수시로 외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렇다 보니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실 괜찮아질 부분들이 계속 악화되고 결국은 폐렴으로.... 저희 출산 지원하고 거의 1년 안에 정말 아이들워낙에도 아이들이 잔병치레 많이 하고 그러지만 미등록이주아동들은 더심하게 잔병치레가, 빈도수가 많고 더 증상 심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만성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자 5)

여가 그게 이제 12개월 이전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12 개월 이전의 건강상태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평생 따라가는 건데. (참여자 3)

② 단순히 의료비 문제로만 명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의료비 문제는 미등록 이주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도 있지만, 입원과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이 전혀없기 때문에 감당하기

들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아동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등록이주아동이 큰 병에 걸리기 전, 예방접 종과 위생관리와 양질의 먹거리가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았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일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단순히 치료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음으로써 겪는 모든 문제가 아동이나 그 가정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고 그게 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합니다...(중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매일 매일 보시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게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정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의료

비 문제...(참여자 5)

예방접종과 위생관리와 양질의 먹거리만 있으면 사실 괜찮을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울려서 안 된, 취약하니깐 거기서 오는 게 많고.... (참여자 5)

(3) 누구도 관심 없고 책임지지 않는 보육현실

부모라면 내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서비스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미등록이주아동 부모 역시 여느 부모와다르지 않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어 불안한 신분임에도 자녀들의 교육에 조바심을 내보인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체류신분 때문에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림의 떡'이다. 다행히 일반 어린이집에서 입학허가를 받는다 해도 비싼 보육료가 너무 부담되며, 몇 개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위한 어린이집은 인력도 공간도 부족하다.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일부 부모는 조바심과 열의로 이주민센터를 어린이집 다니듯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부모들은 아이의 교육권을 찾기 위한 시늉을 해본다.

①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의 교육에 조바심을 냄



미등록이주아동 부모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한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어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뭔가를 배워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한국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장점이 되고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는데 도움이 되므로 학교교육 외에 별도로 영어공부를 시키기도 한 다. 미등록이주아동 부모들이 아이의 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한국 부 모들과 별만 다르지 않지만 미등록아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건 교육적인 접근이래요. "어우 야~, 그게 뭐 중요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여러 가지 마음속에 내재 된 한이라 그럴 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주는 게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구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개입해서 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참여자 2)

이제 그래도 거길 가서 뭘 배워오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3명의, 우리 담하고 바로 옆에 사는 애기엄마는. 하루는, 한 일 이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애기는 가서 지금 뭔가를 배운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다른 아이들도 뭔가를 배운대요. 근데 자기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하냐 이거야. 뭔가를 금방 배워서 다른 애들은 막 발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중략)...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불안한 거예요. 어린이집 안 가고 우리 애들만 놀아.(참여자 4)

아이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엄마도 빨리 한국에서 잘 지내려면 엄마도 아는 거야, 한국에서 영어를 잘 하면 뭔가 더 장점이 돼서 한국 사회에서 잘 지내고 그게 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참여자 5)

② 미등록이주아동과 부모에게 그림의 떡인 어린이집



미등록이주아동들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 게 된다. 간혹 미등록 아동을 받아주는 어린 이집이 있으나 보육료 전액

을 부담해야하므로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월급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한국아동들에게는 어린이집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미등록이주아동들에게는 감히 근접할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노란차를 탄다는 것이 미등록이주아동들에게는 얼마나 큰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등록이주아동은 미등록이라는 체류신분과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비싼 어린이집 보육료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혼자집에서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게임만하다보니까 발달상태도 더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병설유치원. 근데 그 미등록이라는 건 저런 병설유치원, 사실 조그만 학교에 참 초라한 그런 유치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미등록에게는 굉장히 저기가 그... 저기를 들어가고 싶잖아요, 미등록은...(중략)...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미등록은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길 하는 거예요. 외국인 자녀라도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아이는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다 하고요. ...(중략)...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저 학교라는 저게, 사실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그림의 떡일 수도 있고 정말로 선망하는 대망하는 그런데다...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렇게, 어린이집이 보통

사람에게는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노란 차에 한 번 탄다는 게 그렇게.. (참여자 4)

애는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 했어요. 부모가 보내려고, 그 군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 봤는데 애기 때 80만원이 넘는 비용이잖아요, 미등록아동이니까. 그 돈을 다 내라고 하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대로 주야근무를 하면서 엄마는 주간을 하고 아빠는 야간을 했죠. 근데 두 사람 다 집에 들어오면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어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하거나 포클레인 그 자동차 갖고 계속 놀았어요. 그래서 발달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참여자 3)

③ 인력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다행스럽게도 미등록이 주아동 부모들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등록이주아동 어린이집을 찾는다고 해도 기관은 아동들에게 충분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들은 점점 성장하는데 어린이집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 또한 기관운영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재정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들은 기약 없는 대기자가 되어 버린다. 참여자 중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여러 자극이 필요한 아동기인 만큼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했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에서부터 정리까지는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한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미등록이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 자체도 부족하지만 현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아동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투자 역시 부

족한 실정이다. 마치 아름다운 발레공연 뒤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발레 리나의 발이 있는 것 같이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사업에는 많은 자원과 수고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교사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마당이라도 있으면 풀죠. 근데 마당도 없잖아.... 다양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투입 돼야 해요. 인력, 전문 인력이 투입될 때만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정서지원도 그렇고. 하다못해. 지금 재단 사업으로흙 놀이 정서지원사업 하는데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교사가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보조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명당 하나(한 명)놓고선. 그럼 다른 교사도 애들 안 보고 다 붙어서 흙 놀이 하는 것만 하고. 하하. 끝나고 막 뒷정리 하는데도 30분에서 1시간이야. 방 닦아야지그거 빨아야지 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많아야하는데 이런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예요. (참여자 2)

다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우리 지금 있는 애들도 크는 중이었고 그 때는. 정말 좁아요, 저희는 10평도 안 돼요. 아이들이 진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근데 7명을 거기서 데리고 있었는데 아(한숨)..., 애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데려오지 못하고. 이사 가면 데려 오겠다.... 지금도 엄마는 계속 물어봐요. 언제 이사 가냐고. 어제 연락을 해 봤는데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저도 이제 하루 빨리 데려오고 싶고. (참여자 3)

제가 정말 미안한 건 우리도 다문화 전담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어린 애들을 하고 그 나이 대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작은 목소리로)죄송해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나와서 혹시 그것도 되면 좋겠다, 선생님이 한두 번 해 가지고 저 애들도 봐줬으면 좋 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에 포기를 하고 제가 계속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참여자 4)

④ 어린이집의 열악함을 보완해주는 이주민센터와 교사들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 사업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하 다 이들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음 을 알게 되어 이주민센 터와 어린이집을 운영 하게 된 배경이 있다.

마치 큰 나무에 물을 주어 나뭇가지가 자라나고 나무와 나뭇가지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과 이주민센터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함께 사업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 이주민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사업에 필요한 모금활동을 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주중에는 어린이집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에서는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로 의지하며 공존하고 있다. 또한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휴일도 없이 지원을 나가는 등 어떻게 보면 교사가 센터의심부름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있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아동 어린이집 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동과 가족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사들은 다른 문화권의 아동이 등원하는 경우에 2주 동안 엄마가 어린이집에 와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아동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되고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퇴근 후 아동들 데리러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엄마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정도가 아닌, 교사와 함께 아동의 하원준비를 같이하도록 지원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배경을 가진 교사들은 발달이 느린 미등록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역할놀이 등 특수아동과 같이 개인별개입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을 세워 긍정적인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아동

들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 교육 시스템을 아동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발달에 따른 언어, 행동, 표현하는 구사력 수준 등 아동의 발달정도를 최대한 끌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부족한 공간과 인력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보통은 센터 이런 쪽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센터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이제 주중에 또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에 센터 일이 있으면 또 가서 같이해야 되고 그래서. 저보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원장님은 센터 심부름꾼같다고.....(중략)... 서로 협조가 돼야 돼요. 센터에 상담을 왔다가. 그렇게해서 저희...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던아이들 중에 주변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그래서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1년에 한 번 주점, 호프? 이런걸 하는데 그것도 보육 사업을 위한, 그런 모금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할 때도 어린이집 일이 끝나도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중략)....그런 것도 하고 또 역시 센터는 우리 보육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들을 다 하죠.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센터하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참여자 3)

하나의 큰 나무에서 정말 가지가 또 뻗어서 그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다 물을 주고. 또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남들은 왜 이렇게 뭐, 뭐 크게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저기(관계)인거죠. (참여자 6)

근데 그쪽에서 자꾸 애기들이 오고, 엄마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해결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아마 운영을 했을 거고,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운영을 했을 거고. (참여자 4)

⑤ 어린이집에 못가니 보육(교육)을 받기 위한 시늉을 함



맞벌이 미등록이주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를 돌볼 수 없는 여유 가 없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아동의 할머니가 잠깐 아동을 돌보기 위 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다른 대안을 마 련하지 못하여

체류기간만 지나게 되어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나마 할머니처럼 누구라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며 어린이집에 보내듯이 이웃에게 맡기기도 한다.

반면, 전혀 대안이 없었던 OO는 학교 오듯이 이주민센터에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방글라 말, 영어, 한글 등을 공부하고 집에 돌아간다.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는 교육에 대한 욕구와 열의는 있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기 위한 시늉을 해본다.

누구라도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쟤는 유치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을 안 가고 할머니가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조차도 알 수는 없지만 여행비자로 와서 눌러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중략)..... 자식 때문에 왔다가 원래는 3개월 있어야 하는데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연장이 안 되가지고 더 있다가 그냥 그럼 눌러 앉아. 이래가지고 앉아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공장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참여자 6)

애기엄마가. (어린이집에)보낸대요.....(중략)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을 간 게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였다가 지금 쉬고 있는 한국 그 선생님이 '그래, 그럼 내가 봐줄게, 나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 있어.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엄마는 저보고 어린이집 간다고 했어요. 와서 상의

하기를 제가 '이주여성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어린이집 가듯이 아침에 여기 와서 집에서도 공부 시킨대. 영어 공부, 아까 말했듯이 영어 공부도 시키고 방글라말 공부도 시키고, 한글 말도...우리 센터를 학교 오듯이 어린이집 오듯이 11시에 점심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 했어요. 싸 갖고 오세요, 도시락 싸 갖고....(중략)...... 책상에 앉아서 애기들 셋이 공부를 하고, 점심이됐어 이제. 12시 좀 넘으면 도시락을 같이 먹어, 자기들 식구들끼리 (웃음). 도시락을 먹고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공부 이만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중략).... 학교 오는 것처럼. 그런 권리를 찾아서... (참여자 4)

(4) '있는 데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있으나 마나 한' 현재 정책

미등록이주아동은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없이 사랑스럽고 환영 받는 존재이지만 체류자격으로 보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있는 데 없 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존재를 위한 정책 역시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① 아동권리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현재 미등록이주아동들 은 초, 중, 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 가능성 이 열린 상태이지만 한 편으로는 학교장의 재 량이라는 유동적인 기 준에 매달려야하는 불 안정한 상황이다. 뿐 만 아니라 입학에 필요

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어떠한 행정시스템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입학서류 구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을 허가받은아동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다문화아동들만 별도로 '다문화특별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굳이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다문화특별반에서 나눠주는 서류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부모들은 학교교육방향에 대한 정보 없이 그저 학생들만 학교로 보내고 있다. 또한 담임교사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학급을 맡게 되었다고 하소연만 하고, 보조교사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학교는 다문화학급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출석시켜놓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육권인데요. 일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닐 수는 있는데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대요.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미등록아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면 서류가 구비가안 되는 거죠. 서류, 서류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도 있고 못 다니는 아이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참여자 3)

제가 이제 하나라는 아이는 필리핀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말은 당연히 잘하고 하는데 부모님이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영어랑 따갈로그어 밖에 쓸 수 없고. 그래서 아이의 입학원서부터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통역을 대동해서 부모님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의 입학식까지 갔었어요. 갔었는데 보니까 정~말 표면적인 제도인거에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당연시되고, 그게 당연시되고 제도들이 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아직까지 공교육권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한참이나 멀었구나... (참여자 1)

근데 많아도 그게 보기에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많은 단체가 10개가 있으면 뭐해요. 각자의 자기네 실적만 갖고, 애들, 만약 미등록이면 애들 그 숫자, 걔네들 이름.... 그거 취합하기 바쁜 거예요. 예, 걔네들을 갖고 공부를 시키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학교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와서 그냥 있으면 돼요. 있어서 출석체크만 잘하고 있으면 되지.... 아니 멀쩡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일단은 지금 학교 자체에서도 다문화교사라는 분들이 계세요....(중략)...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어쩔 수없이 맡았어요.." ...(중략)... 어쩔 수없이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거죠... (참여자 6)

(5) 배려와 양보가 기반이 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권조차 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미등록이주 아동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출생등록제도이다. 또한 배려와 양보를 기반으로 서로 연대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아동들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한다. 미등록이주아동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는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자녀들의발달 상태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고 교사들과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 자체를 사랑하고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경험과 역량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 할 수 있는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

① 미등록이주아동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시작, 출생등록



미등록이주아동보육현 장의 실무자들은 미등 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정책에서 무엇보다 출 생등록이 우선시 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출생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은 몇 천 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발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부모역할에 대한 조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은 없다. 현재 한국은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속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기에

는 오랜 시간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자체에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출생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출생등록이 아니더라도 미등록이주아동들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아기등록증이라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등록이주아동보육정책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출생등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출생 신고가 아니고 등록으로 다 바꾼 다음에 외국인들 등록을 출생 등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중략)... 정말 00만큼은 이 나라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한 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출생등록 캠페인이 굉장히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참여자 3)

그런 방법을 여는 거죠. 어쨌든 일본은 일본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고, 어쨌든 공교육을 받고 일본에 남든 본국으로 돌아가든 최소한은 하는데. 그런 거 정도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보수적인 일본도 그 정도는 이주아동들한테는 해 주는데...(참여자 5)

② 배려와 양보를 통해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목소리 내기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합법적인 이주민들은 180만 명으로지속적인 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이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신들보다 취약한 미등록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면 한국사회도 함께 연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비록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수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지 소수의 위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개인의 아픔이 공동의 아픔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의 연대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와 약자의 권리를 찾는 진정한 방법일 수 있다.

180만명, 점점 늘어나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해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지금은 합법이고 결혼이주여성이기도 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같은 이주민으로서 다른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있는 한국 사회와 같이 연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5)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제 생각에는 똑같다.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공동의 아픔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4)

③ 미등록이주아동을 우리나라 아동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 전 환 필요



한국사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이주민들을 단시간 내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로 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공유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과 열린 마음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시종일간 미등록이주 아동을 제도 밖에 있는 소수집단, 취약계층, 늘 소외된 존재로 시종일간 잠재적인 문제 집단으로 보도하는 등 문제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 다. 그러나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를 보다 더 풍성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미등록이주아동의 발전가능성과 사회적 기여를 체류자격만으로 외면해버린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잠재적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꽃밭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다양한 꽃과 잡초가 어우러져 상생하고모두에게 동일한 비를 맞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비영리조직이든 돈보다는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미등록이주아동들과 공존하는 풍요로운 한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좀 더 넓게 보면 더 많은 이주민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체류를 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 권리 시민의 권리, 똑같은 동등한 여기서살아갈 권리를 주는 것은 결국은 선주민인 한국 사람들, 우리 사회가 더열려 있어야 되겠지만 이주민들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정부는 예산 이런거로만 이주민들, 이주아동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한 발 옆에서떨어져서 보면....(중략)... 제도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고,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거긴 하지만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이 아이들이나 대상자들을 보는 것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아이들, 미등록이주아동 문제를 다룰 때도 너무 그런... 아까 말 한 것처럼 문제상황만 해서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딱 검색했는데 미등록이주아동 딱! 너무 그런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살아갈 구성원으로써의 노력도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5)

비는 동등하게 어느 꽃이든 어느 나무든 내려주잖아요. 햇빛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 오는 창문을... 그래서 이주아동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실존법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똑같다. 똑같이 비도 내리고 뭐도 하고 이슬도 먹고 커야지...(중략)... 왜 저는 저 돈을 그렇게 아끼고 못쓸까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마음이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하는 건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어쨌든 한국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NGO단체든 또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마찬가지다. (참여자 4)

④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과 관련된 고민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미등 록이주아동과 관련된 NGO단체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늘 고군 분투하고 있다. 이주아 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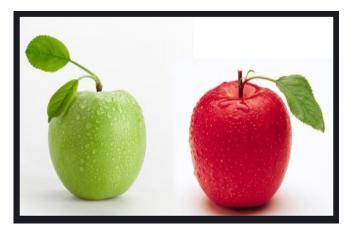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체류자격의 부여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방편적 대책만이 제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정책과 제도적 접근이 미흡하여 늘 반복되는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법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뽑기 기계에 있는 인형을 뽑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뽑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미등록이주아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해결하겠다는 누군가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에 이주아동 문제가 고민이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되었고 법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어쨌든 사회 전반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변화되니깐 저는 그러기 전에 대안적인 안전망이 오히려 차곡차곡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늘 NGO가 하는 일이 대안을 해보고 현장에 이런 것들을 정책제안을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있어서 단순히 복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등록 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중략)....미등록인 대부분의 이주가정들은 체류자격이 가장 큰 이 사람들의 걸림돌이잖아요. 아이의 표현으로 쇠사슬이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근본

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것인데... 저 뽑기에 저 인형들은 어쨌든 누군가가 뽑아줘야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뽑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을 수천, 수만 원 넣어야 겨우 뽑을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문제들이 참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 꺼내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들이 끊임없이 되는 것들... (참여자 5)

⑤-1.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1 : 다름의 인정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사



인간발달 단계상 아동 기 때 의미 있는 성인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대인관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훌륭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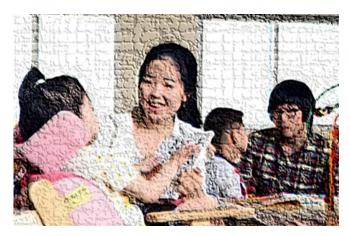
교사는 한국과 다른 문화, 종교, 관습에서 성장한 아동을 만나게 될 때 거부하거나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아동들이 현재 살고 있는집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부터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아동들에게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것은 다름에 대한 이해죠. 그 밑에 보면 "차이를 차별 할 수 없어요." 이건 어디 그,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중략)...우리의 기준으로 잣대를 볼 게 아니라 일단은 다른 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요.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해를 시키고 설득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는 굉장히 심각 한 게, 저는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종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한 번은 개신교에 독실한 신자이신 분이 오셨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아이,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은 '할랄' 이란 음식을 먹으면서 고기 위주로 먹고. 뭐라 그럴까 냄새가 굉장히 되게 특이한 냄새들이 나요. 나도 처음에는 '이게 뭘까?' 했었는데 음식, 그 좁은 방에서 주방이랑 다 같이 있는 이런 욕실도 없는 데서 살고, 월세 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음식 냄새가 다 밸 수밖에 없고. 애한테도 계속 냄새가 나고 부모한테 더 강하게 나고. "하, 애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애가 눈빛도 이상하다. 이슬람이라 그런지. 거기 테러국가 아니냐." 이렇게 막 상처를 줄 수 있는.. (참여자 3)

이주민 자체가 어떤 배경에서 여기를 오게 됐고 어떤 배경에서 살게 됐는지 그 삶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집에 가봐서 정말 어떻게 사는지.... 저는 심방가라고, 그 집에 가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웃음). 가보면 금방 드러난다고. 여기서는 이해 못해요. "걔 엄마는 왜 그러냐?" 이러는데, 사는걸 보면 좀 더 이해가 한 단계 가고...그래서 자꾸 가보라고 하는데, 교사들의 기본, 특히 이주민을 다루는 교사는 그 기본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것같아요...(중략).... 이주아동을 다루는 분은 정말로 그 이주배경과 이주민들의 그런 개별적인 문화를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어야된다 생각하고요. (참여자 4)

⑤-2.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2 :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발달 상 태에 대해 소통하고, 교사들 간에는 교육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 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의 부모들은 세심하게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속도, 필요한 의료 및 보육서비스를 체크하지 못한다. 부모들이 의료 및 보육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단지 미등록이라는 체류신분 때문만이 아니라 부 모가 아동발달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아동발달과 부모교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 으로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발달에 대해 조언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 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더불어 특수교육 교사들은 아동이 발달 상으리거나 특이한 측면에 대해 다른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므로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파트너라고 할수 있다.

제가 늘 생각할 때는 정말 보육교사는 공부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만 똑똑한 분들, 돈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어떨까...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육교사만큼은 대학교수...(웃음)만큼 욕심을 부려서 하는 말인데 정말로 대우도 많이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갖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이가 자랄 때그...1-3세까지 다 형성이 된다, 습관도 형성이 된다, 그렇게 하는데...그냥, 그냥 키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4)

또 엄마한테 이해를 시킨다든지, 담임한테 아이의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특수교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중략)... 미등록이주아동 보육교사의 자질 중 하나는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문제는 한국은 그러면 엄마들이 바로 가잖아요. 소아과 가고, 발달검사하고 해서 바로바로 진단 받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이런 케어가 되는데 이주여성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깐 생각보다 더 안 받아들여져요.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여러 문제가 엉켜버리는 거죠, 클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등록이주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이런 아이들은 좀 더 세심하게 발달단계에 맞춰 잘 자라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5)

⑤-3.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3 : 엄마의 마음으로 미등록아동이 아 닌 '아동'그 자체를 사랑하는 교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등록이주아동은 또래 한국아동들과 함께 생 활하는 과정에서 부딪 히게 되는 어려운 상황 이 발생하면 교사를 통 해 심리적 안정감을 되 찾게 된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랑으로 아동들을 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부모의빈자리를 채워주고 책임지는 존재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직업으로 보육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아동들과함께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질은 그런 거 같아요.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미등록이주아동뿐이 아니라 예, 그냥 단순히 직업으로써만 보육교사를 선택한다면 아이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웃음) 둘 다 불행한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어떤 모습이든 다사랑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자질인 것같고요. (참여자 3)

계속 부모하고만 지내지.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에 대한 편안함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그곳을 벗어나도, 그곳을 나와서, 나왔을 때 자기들이 또래아이들과 생활하고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그런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안정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것도 보육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중략)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역할, 외부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 진리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역할, 일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 사회생활 및 공동체생활 첫걸음을 책임지는 역할... (중

략)... 그래서 선생님들이 속으로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준다면 아이들 또한 잘 따라와 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이다,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진심을다해서 아이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다. (참여자 1)

⑤-4.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4 : 소통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의 부모 는 불법이라는 체류신 분에 대한 불안으로 자 신과 자녀에 대한 정보 를 감추려하고, 교사는 아동에게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아동의 정보와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다. 또한 교사들은 한국 문화에 따른 자녀양 육방법을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전달하는 소통의 과정 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미등록이주아동 중 발달이 더딘 아동을 파악하 여 적절한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훈련된 특수교육 배경의 교사를 필요로 한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걸리듯이 교사는 미등록이주아 동과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요구된다.

이 분들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뭐든지 감추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 먼저물어보지 않으면. 캐 물어서 알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보여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중략).... 그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양육법을 모르고, 우리는 그 사람들 문화나 양육법을 모르기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이 하는 방법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 마음의 들을 때까지 계속 교육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인내해 줘야 되고....(중략)....이제 아이들이 지체인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을한 사람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참아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특수교사가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커피가 저렇게, 드립 커피로 내리면 좀 시간이 걸리듯이. 모든 일에 여유가 좀 있어야 견뎌내기 쉬울 것 같다...(참여자 3)

⑤-5.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5 : 이주경험은 교사에게 득(得)이 되기도 실(失)이 되기로 함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중 중요한 것은 아동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주라는 경험은 직접 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없으며 이해하기 어려 운 부분인 만큼 유사한

결혼이주 여성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 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이주라는 경험이 오히려 교사로써의 자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이주경험을 공유한 것을 도움이 되지만 각자자신의 출신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아동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동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나는 선생인데 나한테 이래'와 같은 방어적인 태도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포용을 필요로 하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지도할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희 무지개, 저희 그 보육실에는 한국인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선생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이주여성분인데일본 분, 두 분이에요. 메인으로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채용한 파트타임교사는 베트남분이신데 그 분은 그래도 이제 한국 국적을 따셨죠, 취득을

하셨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본인들이 느꼈던 것도 있고 이주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사실 보육교사 자격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점점 전문성을 높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본인들이 되게 적극적이세요. (참여자 1)

쭉 보면 제일 잘 아는 건, 그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건, 그렇게 자라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고 이러는 건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던 유학생들,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커서 계속 공부를 하거나 이럴 수 있고... 더 가깝게빨리 찾으려면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이죠. 이중문화를 다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이 충분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이런 보육 전문가로 아이들을 케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참여자 5)

조선족인 분이 한분 있었어요. 너무 맘에 들었어요. 적극적이고 일도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나는 다른데 가서 버는 게더 많이 번다, 못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던 것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참여자 3)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2011년도인가? 10명의 이주여성들을 보육교사를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중략)... 근데 그게 1년 만에 끝났죠.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분들도 각자의 나라의 문화가 틀려 서로 보육의 문제에서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깐 본인 나라의 교육방식에, 조금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한국사람 밑에서 일할때하고 한국사람 밑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다양한나라가 있어요. 그러면다양한 나라끼리의 안 좋은...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너를 가르쳤는데,이 사람은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그것도 하나의 문화인데아무리 설명을 해도,이 사람들은 "나는 선생이야, 나는 선생인데 나한테이래." 라는 감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구나...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은 다시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참여자 6)

3. 결과 요약

미등록이주아동,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남

우리나라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채로, 영속성 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안녕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지만,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에는 고난의 시작이 예고되어 있다. 발달 의 자극이 필요한 영유아 시기이건만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불안이라는 일상을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간다. '있는데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 는 아동들은 늘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주변인이자 피해자이다. 이들은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로 흔히 인식되나, 실제로는 이 러한 문제행동 뒤에 불안과 고립이 숨겨져 있고, 언어로서 잘 표현하지 못하 는 터에 그들의 함성과 요구는 분노로 표출 될 뿐이다. '미등록'이 약점이 되어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고, 불량한 영양 상태와 주거 환경, 열악한 양육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한다. 부모보다 한국말을 잘하게 된 아이들은 부모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와 자신이 불 법체류 단속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되기도 하면서 불법체류라는 쇠사슬에 묶인 상태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 비록 여러 어려움 속 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저마다 다양성이라는 예쁜 빛깔을 가지며 앞으 로의 사회를 비춰나갈 빛 같은 존재들이다.

건강한 존재로의 성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그러나 성긴 구멍의 안전망

영유아 시기의 건강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미등록이 주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고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밖에 없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가기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못 받으니, 처음에는 감기처럼 가볍고 일반적인 증상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큰 병으로까지 발전하며 악순환이 지속된다. 미등록이주영유아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의료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후 의료제도의 부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검진 기회의 박탈, 예방접종 기회 부족, 불량한환경과 먹거리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관심 없고 책임지지 않는 보육현실

부모라면 내 아이가 또래 아이보다 발달이 늦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서비스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다. 미등록이주아동 부모 역시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어 불안한 신분임에도 자녀들의 교육에 조바심을 내보인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체류신분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림의 떡'이다. 다행히 일반 어린이집에서 입학허가를 받는다 해도 비싼 보육료가 너무 부담되며, 몇 개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은 인력도 공간도 부족하다.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일부 부모는 조바심과 열의로 이주민센터를 어린이집 다니듯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부모들은 아이의 교육권을 찾기 위한 시늉을 해본다.

'있는 데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있으나 마나 한' 현재 정책 미등록이주아동은 아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없이 사랑스럽고 환영받는 존재이지만 체류자격으로 보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있는 데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 역시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배려와 양보가 기반이 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권조차 누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미등록이주 아동을 위한 첫 번째 정책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출생등록제도이다. 배려와 양보를 기반으로 서로 연대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 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아동들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전환이 요구 된다. 무엇보다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과 자녀들의 발달 상태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고 교사들과는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 자체를 사랑하고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Ⅲ-3-1> 포토보이스 결과 코딩표

코딩범주	유형화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 그러나 축복받지 못하는 생명으로서의 고난의 시작 발달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외로움과 고립에 파묻혀 있음
	일상에 깊게 도사린 단속과 추방당함의 불안
	정체감의 혼란, 나는 누구지?
	'미등록'이란 있는데 없는 존재가 아닌 숨겨진 존재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는 주변인이자 피해자인
	아동
불안전한 존재로 태어남	'소통도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힘든 아이'
	문제 행동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불안과 고립은 분노로 표현됨
	'미등록'이라는 약점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감수하며 살아감
	불량한 영양상태 그리고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 인 미등록이주아동,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 지 못함
	부모의 장시간 노동, 부족한 육아 정보 등으로 열악한 양육 현실에 처해 있는 아이들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부모와 아이들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다양성을 품으며 사회 에 보석과 빛이 될 존재라 믿음
건강한 존재로의 성장을	적시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의 반복과 악순환이 지속됨
위한 의료서비스, 그러나 성긴 구멍의 안전망	단순히 의료비 문제로만 명명할 수 없는 복합적 인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의 교육에 조바심을 냄
누구도 관심 없고 책임지지 않는 보육현실	미등록이주아동과 부모에게 그림의 떡인 어린이집
	인력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열악함을 보완해주는 이주민센터와 교사들

코딩범주	유형화
	어린이집에 못가니 보육(교육)을 받기 위한 시늉 을 함
'있는 데 없는'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있으나 마나 한' 현재 정책	아동권리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미등록이주아동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시작, 출 생등록
	배려와 양보를 통해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목 소리 내기
	미등록이주아동을 우리나라 아동과 동등하게 바 라볼 수 있도록 인식 전환 필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배려와 양보가 기반이 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1 : 다름의 인정 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2 : 부모들에게 는 자녀들의 발달 상태에 대해 소통하고, 교사 들 간에는 교육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3: 엄마의 마음 으로 미등록아동이 아닌 '아동'그 자체를 사랑하 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4: 소통하며 인 내하고 기다려주는 교사
	미등록이주아동을 위한 교사상 5: 이주경험은 교사에게 득(得)이 되기도 실(失)이 되기로 함



Ⅳ. 정책대안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아동권리관점에서 현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책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차원의 노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우선 중앙 정부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정책 대안이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을 제도화할 필요가있다.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이들의 정확한수치와 통계자료의 부재는 큰 걸림돌이었다. 이 점은 포토보이스 면접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숨겨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주아동의 보육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의 수와 같은통계자료 역시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현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생등록은 국적취득 및 체류인정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출생등록은 인간의 출생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으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미등록이주 아동에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된 교육서비스도 이주아동에게 등록번호가 없기에 실제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는 의료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제도는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체계를 도입하여 미등록이주아동의 이름, 출생지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의 도입은 비단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미출생신고와 허위출생신고의 문제도 해 결할 수 있으며,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확대에도 결정적 인 결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주아동 에 대한 현황파악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등록이주아 동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확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 정하면서,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 공을 보장하는 조치, 산모를 위해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예방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완전한 이행을 추구할 것을 강구하고 있 다. 하지만 포토보이스 인터뷰 결과 미등록이주아동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몰 려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해 질병의 악순환을 경험하며 발달조 차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등록이주민과는 별도로 이주아 동에게 한하여 대한민국 수급권자에게 부여하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급격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미등록이주가정에서 자부 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등록이주아동에게 허용되는 예외 적 특례이나, 그들이 출생 후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산전관리부터 잘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미등록이주여성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보건소 등을 통하여 산전의료서비스(예: 엽산제·철분제 제공, 임신 초기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등)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권리의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다. 한국의 영유아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아동의 보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100%를 자비로 내야 한다.

미등록이주아동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일종의 취약계층으로, 취약계층의 영유아는 언어와 인지의 발달이 늦고, 우울과 분노와 같은 정서적문제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 2010). 포토보이스 인터뷰에서도 미등록이주아동들이 인지·언어·심리·사회성 등 다양한 측

면에서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의 페리 유아원 연구(Perry Preschool Project) 등을 살펴보면, 아동기 초기인 영유아기에 1달러의 투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17달러라는 사회적 회수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결과 등(Schweinhart et al., 2005)은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과 기여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연구결과에 견주어 보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 양부모 모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방임상태에 처해질 수 있기에 보육서비스는 발달의 문제 이상으로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미등록이주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이나마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받을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어 보육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이주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의 혜택은 받을 수 없더라도, 아동권리의 차원에서라도 미등록이주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미등록이주아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동으로서, 보육교사역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와 지원이 요구된다. 포토보이스 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미등록이주아동은 언어가 다르고 환경적 결손으로 인해 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경우처럼 1:3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영유아의 경우 1:20의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현장의 현실상, 현재 입소가 허가되고 있지도 않은 미등록이주아동에게 1:3의 비율을 고수하려는 것은 무리가있다. 그러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하되, 미등록이주아동이 3인 이상 혹은 기관의 10% 이상 재원하는 경우 미등록이주 아동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민감성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대체교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다문화교육과 병행 가능한 것으로서, 미등록이주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경우 다문화교육을 필수 의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정책 대안이다. 현재 미등록이 주아동에 관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고 지원정도도 상이하다. 기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정책을 타 지역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인구분포에 따른 지자체의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정책 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가령,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자녀 어린이집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도 좋은 예 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2006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자 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또는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¹⁵⁾하여 교사 인 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육료 부담 을 경감시켜 가정 해체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인원이 1~5명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 보육인 원이 6~10인 경우에 보육교사 2인, 보육인원이 11명 이상의 경우에는 보육 교사 3인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반면, 통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인원 이 3명일 경우에 교사 1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간접 지원으로는 외국인근로 자 외국인 근로자 자녀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 감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경기도, 2016). 그 러나 보육료 감면 조항은 전담·통합 어린이집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한계점 이 있다(백선정, 2015).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을 지정 하는 것은 시군에서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인구 분포와 외국인 근로자 지정 어린이집 입지의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에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가 포함되나 이들은 신 원을 확인받을 수 있는 행정서류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는 있으나 유명무실한 결과를 보이고 있

¹⁵⁾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① 전담 시설(국내아동은 보육하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만 보육) ② 통합시설(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3명 이상 재원 중이고 국내 아동과 통합하여 보육)로 구분 됨.

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관련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서울특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인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554,160명)로 전체 외국인 인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은 457,806명(26.2%)로 나타나(행정자치부보도자료, 2015)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자녀 보육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을 것이다. 물론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시행된 사업을 통해 한계점으로 대두된 외국인 근로자 인구분포와 외국인 근로자 지정 어린이집 입지가 불일치하는 현상은 정확한 아동보육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교사가 아닌 외국인 아동중심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신분서류는 앞서 제안한 '출생등록'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확산과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면,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지원 사업 목표에도 제시되어 있 듯이 아동의 발달권 보호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영역 이고 그 과정에서 교사라는 존재는 아동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 결과에도 제시된 것과 같이 현 재 미등록이주아동 보육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아 동의 특성상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마인드와 민감성이 매우 필요한 자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아동과 함께 할 보육교사와 관련된 양 적·질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포토보이스 결과에서 확인 하였듯이 현재 미등록이주아동 관련 보육시설의 교사들은 단순한 보육교사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불법체류라는 불안한 상황, 열악한 공간, 부 족한 인적자원 등의 환경에서 지금까지 미등록이주아동지원사업을 묵묵히 이끌어 왔다. 이에 교사들을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역량강화, 소진예방, 힐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현실화 및 제도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 다. 또한 아동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바우처 도입을 통해 기존의 다문화 교육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미등록이주아동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체류신분을 넘어 인권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고민하여 사회적 소

수집단을 권리보장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미등록이주아동 보육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긴급지원 대상의 확대적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 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 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위기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6). 특히 긴급지원 급여 항목 중 위기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은 무엇보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주향하고 있으며 긴급한 치료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건강권을 보 장하는 의료비 지원과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동의 교 육권을 보장하는 등 취약하고 응급한 상황에서의 인권보장의 가치를 내포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보장의 가치와 목표를 미등록이주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2016)에 따르면 올해부 터 재외국민까지 긴급지원대상자로 확대되었으므로 대상 조건 중'⑩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보건복지부, 2016, pp38)이라는 조항에 미등록이주아동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16).

포토보이스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등록이주아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및 주거에 관한 보장조차 받지 못한 채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린 존재인 영유아는 경제적 빈곤으로 말미암은 의료와 위생, 안전, 주거 등의 문제에 노출되었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료가연체된 가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긴급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미등록이주아동까지 확대 실시하여, 이들에게 주거 및 의료서비스 지원이나 미등록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료가 체납된 경우 대납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

¹⁶⁾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보건복지부, 2016, 38).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④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 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④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색할 필요가 있다.

3. 미등록이주아동 권리에 관한 민간차원의 노력

첫째, 아동권리에 입각한 미등록이주아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 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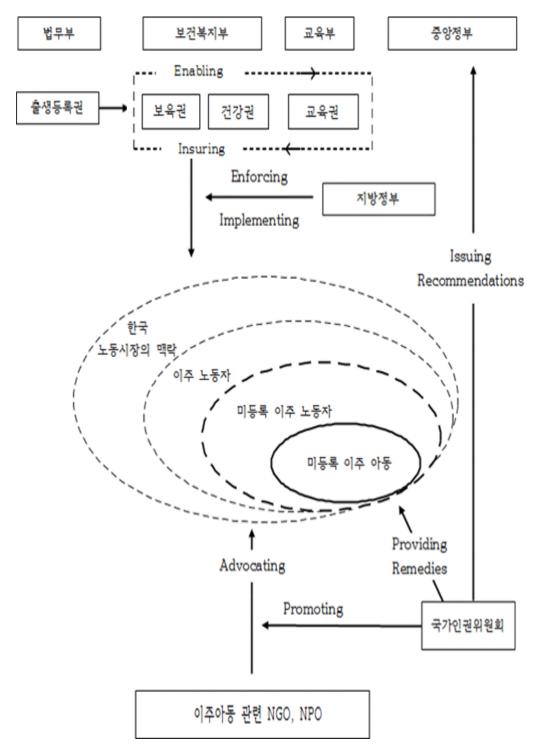
영유아의 복합적인 욕구는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정한 체 류자격이지만 우선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부재나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욕구 는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로 인해 채워질 욕구가 아니라 이들이 성장하는 동 안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는 본 연구 외에도 미등록이주아동의 실태와 관련된 연구에서 동일하게 지지되고 있다(군포 아시아의 창 외, 2012; 이주노동희망센터, 2015). 영유아의 복합 적이고 포괄적인 욕구를 고려했을 때, 통합적인 서비스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체계 를 확립할 필요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특히 내·외적 자원이 부족한 미등 록이주아동의 보육시설은 이주민센터 등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생의 효과를 얻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인권단체와의 연계나 미등 록 어린이집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미등록이주아동과 관련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인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아동인권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등의 협 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아동의 법적·제도적 신분보장을 위 해서는 법학영역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는 「이주아 동 권리보장 기본법」재정 및 기존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아시아의 창'과 각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센터에서 세부사업으로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이주아동 건강과 관련 된 지원은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와 함께 각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센터, 외국인노동자전용 의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아동과 다양한 관련 지원은 미등록이주아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외국인노동자나 사회적 소외계층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포토보이스 참여자 중 일부는 미등록이주아동 관련된 특정 분야만 담당하다보니 다른 분야의 지원기관 현황과 어떤 곳이 있는지 구체적인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포토보이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유관기관의현황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미등록이주아동의 욕구와 관련 기관 및 서비스와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관점 및 이론 구축과 더불어 지역의 미등록이주아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거점기관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협력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본 미등록이주아동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체류자격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소비세, 송금비 등 세금을 납부하며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노동과 관련된 측면에서라도 권리보장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의 문제는 체류자격에 묶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더불어 사회적 편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의 걸림돌 중 저개발국가에 대한 편견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사회통합의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전문가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사회통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일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이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등록이주아동은 출생 전 산전관리부터 출생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생애과정 내내 '있어도 없는 존 재'이거나 '존재 자체가 불법'인 상태로 제도의 제약에 묶여 생존과 발달 및 보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 정부나 지역 사회의 관심은 문제가 드러나는 학령기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성 장과정에 있는 존재인 아동이기에 보다 어린 시기부터 사회적 관심과 지원 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에 빛과 보석이 될 수 있는 존재인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 미등록이주아동권리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은 미등록이주아동권 실현을 위한 구조[그림 IV-1-1]와 미등록이주아동권의 법률환경 및 정책대안을 <표 IV-1-1>로 제시하였다.



[그림 IV-1-1] 미등록이주아동권 실현을 위한 구조

<표 IV-1-1> 미등록이주아동권의 법률 환경 및 정책대안

출생등록권	보육권	건강권	교육권		
• 우편·온라인 출생신고의 도입	• 저소득외국인근로 자 자녀 보육 지원(경기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사업 영유아필수예방 접종 국가부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법률대출청구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개정, 미등록 이주아동의 초·중등 학교 입·전 학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초·중등교육 기관과 공공보건 의료기관등의 '통보 의무' 규정면제		
법무부	보건与	교육부			
• 보편적 출생등록제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지원 (경기도 모형) • 문화적 민감성을 확보한 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체계	산전의료관리체계 영유아 건강검진 미등록이주아동 특례조항(의료 급여혜택)	• 상급학교(고등학교 및 대학교)로의 입학 허가		
지방정부					
	• 이주아동전담·통합 어린이집 운영 • 미등록이주아동보육비감면·대납·체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내용 확대적용	•미등록이주아동 응급 의료비지원	다문화보육교사 양성 및 지원다문화교육바우처 도입위기개입서비스		

민간 및 국가인권위원의 노력

- '이주아동 권리 기본법' 제정촉구
-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거점기관 지정사업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촉구
- •국제아동인권센터, 지역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사)한국이주민 건강협회 등

4.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법률·제도에 관한 문헌연구와 보육기관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로 구성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관련 연구에 있어서 당사자 연구가 필요하다. 즉, 미등록이주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연구는 필수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당사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주체로 보육교사를 상정하였다. 엄밀하게 말해, 보육의 주체는 보육기관과 보육교사, 그리고 부모 삼자로 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육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부모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있어 이 두 주체를 보육의 주체로 세우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현실이이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시설과 부모를 보육의 주체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매우 수동적 서비스의 대상자로 대상화 된 보육시설과 부모의 인식을 어떻게 능동적 주체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당사자 연구와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시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포토보이스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 참여자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분석결과 제시한 내용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 연구결과 분석하여 제시한 내용은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현실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빈도 상 예외적인 사례라 하더라도이들의 보육현실을 나타내는 사례는 상징성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가상준·김재신·임재형, 2014,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과 관용", 『분쟁해결연구』, 12(1): 65-92.
- 경기도, 2016, "2016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http://www.gg.go.kr.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세이브더칠드런·이주와인권연구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15,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 국가인권위원회, 2010,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중등과정 학습권 보장돼야", 2010년 1월 25일, http://www.humanrights.go.kr.
- 국가인권위원회, 2011, "미등록 이주아동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돼야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등 권고-", 2011년 11년 13일, http://www.humanrights.go.kr.
- 군포 아시아의 창·안산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평택외국인복지센터·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선, 201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 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회인권포럼, 51-61.
- 김성천, 2010,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사회복지연구』, 7(1): 5-34.
- 김성천·장혜림·안진경·이은하·유희원·이은주·김효수, 2008,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
- 김철효·김기원·소라미·신예진·최서리, 2013, 『2013 세이브더 칠드런 연구보고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 김철효·최서리, 2013,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UNHCR.
- 노혜련·김미원·조소연, 2015, 『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뉴스원, 2014, "무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 해외 사례는?", 2014년 4월 3 일.
- 류은숙, 2007,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인권오름』, 83.

- 미국 아동국(Children's Bureau), http://www.acf.hhs.gov.
- 백선정, 2015,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현황 및 쟁점", 『이슈 분석』, 30: 1-14.
- 백선정·전민경·김예솔, 2014,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정책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201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 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74-77.
- 법제사법위원회, 2015,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원정, 201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 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회인권포럼, 27-48.
-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난민기구, 2005,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 서울: 국제의 회연맹.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 와 권고문 I』.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 와 권고문Ⅱ』.
- 이병화, 2012,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0: 259-290.
- 이봉주·홍현미라·장혜림, 2012, 『'시소와 그네'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주노동희망센터, 2015, 『심층면접을 통해 본 미등록이주아동 실태 연구 간 담회』.
- 이혜원·김미선·석원정·이은하·신순영·이경숙·최은미,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최종 견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 장명림 · 이윤진 · 이정림 · 민현숙 · 이세원 · 송윤정 · 소수정, 2010, 『취약계층

-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 조선일보, 2012,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꿈 키울 수 있는 나라로", 2010년 5월 18일.
- 조영달·윤희원·박상철,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 원부.
- 중앙일보, 2015, "내년부터는 온라인 출생신고...관공서 업무 더 스마트해집 니다", 2015년 12월 14일.
- 최홍엽, 2009,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민주법학』, 41: 313-347.
- 통계청, 2015, 『외국인근로자 현황』, 통계청.
- 통일부, 2016, 『통일부 30년사』, 통일부.
-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수 174만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3.4%", 2015 년 7월 6일.
-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10,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 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환경일보, 2013, "무국적자 '존재하지 않는 내 아이'", 2013년 11월 10일.
- 황필규, 2008, "한국에서의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이주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이주아동합법체류보장촉구연대.
- 황필규, 2013,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회인권포럼, 11-23.
- Catalani, C., and Minkler, M, 2010, "Photovoi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health and public health", *Health Education & Behavior*, 37(3): 424-451.
- Davies, D, 2004, *Child Development: A Practitioner's Guide(2nd Ed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weinhart, L., Montie, I., Xiang, Z., Barnett, W. W., Benfield, C. R., and Nores, M., 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Monographs of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14",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van-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reience. 신경림, 안규남 역

- 1994, 『체험연구』, 서울: 동녘.
- Wang, C., and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269-387.
- Wang, C, 2006, "Youth participation in photovoice as a strategy for community change",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147-161.

부 록

[부록]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 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 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 헌장에서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 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표준규격"(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 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 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 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안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 (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 1. 제9조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 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여타 권리에 부합하는 제한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제11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 목적을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 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

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 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 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 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 하여야 한다.
-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만 제하될 수 있다.

제 15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 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 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16조

-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 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 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 을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 본적 관심이 된다.
-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가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 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 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 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 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

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 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 정한다.
-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기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을 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다음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 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 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 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 는 조치
-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 짐을 인정하며,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

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인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 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계발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잔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계발
- 2. 본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하다.

제31조

-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 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 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 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어떠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어떠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 간, 다국 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 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 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 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 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 의무를 진다.
-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 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고 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

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 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40조

-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 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보장 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 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 없이 사건 이 판결되어야 하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 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 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 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위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 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또는,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 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 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 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 발효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 의 최대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 의 명단은 최초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 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 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매 **5**년마다
- 2.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 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나"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여타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

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기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 2. 본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 의 3분의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1조

-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 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 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이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 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보육 현황 및 정책 연구

발 행 일 : 2016년 7월 발 행 처 : 아름다운재단

발 행 인 : 예종석

주 소: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전 화: 02-766-1004 팩 스: 02-6930-4598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인 쇄: 리드릭(02-2269-1919)